

#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181호 2008. 11. 5 (수)

## 【고 시】

- 정선군고시 제2008-98호 2008 정선군 수렵장 설정고시.....1
- 정선군고시 제2008-99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5
- 정선군고시 제2008-100호 하천점용허가고시.....6
- 정선군고시 제2008-101호 하천점용허가고시..... 7
- 정선군고시 제2008-102호 2008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 8
- 정선군고시 제2008-103호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고시..... 10

## 【공 고】

- 정선군공고 제2008-593호 정선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2
- 정선군공고 제2008-594호 정선군 배수설비공사 대행규칙「안」 입법예고 .....33
- 정선군공고 제2008-604호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1
- 정선군공고 제2008-608호 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제정 입법예고 .....43
- 정선군공고 제2008-609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54
- 정선군공고 제2008-611호 정선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6
- 정선군공고 제2008-612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58
- 정선군공고 제2008-615호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지정.....59
- 정선군공고 제2008-616호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독촉) 및 처분 사전 통지서 공시송달.....60
- 정선군공고 제2008-617호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경과)안내 엽서 공시송달..... 62
- 정선군공고 제2008-619호 2009 정선군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65
- 정선군공고 제2008-626호 정선군 금고지정 결과 공고..... 71
- 정선군공고 제2008-627호 소하천공사시행(소하천점용·사용)허가 공고..... 72
- 정선군공고 제2008-630호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시행 공고.....73
- 정선군공고 제2008-631호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75
- 정선군공고 제2008-632호 지방세 체납자 공매예고 공시송달..... 77
- 정선군공고 제2008-633호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78



## 정선군고시 제2008-98호

## 2008 정선군 수렵장 설정고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정선군 수렵장 설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8. 10. 20.

정 선 군 수

1. 수렵장 설정자 : 정선군수

2. 수렵장 설정내용

□ 수렵장 명칭 : 정선군 수렵장

□ 위 치 : 정선군 일원(수렵금지구역 제외)

□ 설정면적

○ 총 면 적 : 1,219.88km<sup>2</sup>○ 수렵장 설정면적 : 351.78km<sup>2</sup>○ 수렵장 제외면적 : 868.10km<sup>2</sup>

○ 수렵금지 구역 : 공원 및 도시공원, 관광지, 도시계획구역,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농묘·사찰·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의 경내, 도로주변, 자연휴양림, 산림유전자보호림, 기타 수렵금지필요지역

3. 설정기간 : 2008.11.1~2009.2.28

4. 최대수용인원 : 1,000명

5. 사용방법 및 사용료

○ 사용방법 : 사용료 납부 후 수렵장 설정자의 포획승인을 받아 수렵

○ 사용료

(단위 : 천원)

| 업 구 별       |         | 기 간 별       |     |     |     |     |
|-------------|---------|-------------|-----|-----|-----|-----|
|             |         | 기 간 별(천원)   |     |     |     |     |
|             |         | 엽기내         | 30일 | 10일 | 5일  | 3일  |
| 1종<br>(엽총)  | 적색포획승인권 | 400         | 300 | 250 | 200 | 150 |
|             | 황색포획승인권 | 300         | 250 | 200 | 150 | 100 |
|             | 청색포획승인권 | 200         | 150 | 100 | 80  | 50  |
| 1종<br>(공기총) | 적색포획승인권 | 200         | 150 | 100 | 80  | 50  |
|             | 황색포획승인권 | 150         | 100 | 80  | 50  | 30  |
|             | 청색포획승인권 | 130         | 90  | 70  | 40  | 20  |
| 2 종         |         | 1종(공기총)과 같음 |     |     |     |     |

## ※ 포획승인권별 포획가능 야생동물

- 적색포획승인권 :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수평,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어치, 멧비둘기, 참새, 까치, 까마귀
- 황색포획승인권 : 고라니, 청설모, 수평, 흰뺨검둥오리, 어치, 청둥오리, 멧비둘기, 참새, 까치, 까마귀
- 청색포획승인권 : 청설모, 수평, 흰뺨검둥오리, 어치, 청둥오리, 멧비둘기 참새, 까치, 까마귀

## 6. 수렵동물별 포획제한 수량

| 구 분 | 수렵동물                                  | 포획제한수량        | 비고 |
|-----|---------------------------------------|---------------|----|
| 계   | 11종(포유류3, 조류8)                        |               |    |
| 포유류 |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 엽기내 1인당 각 3마리 |    |
| 조 류 | 수평, 청둥오리, 어치, 멧비둘기<br>흰뺨검둥오리, 까치, 까마귀 | 1인 1일 각 5마리   |    |
|     | 참새                                    | 제한없음          |    |

## 7. 수렵방법 및 엽구

## ○ 수렵방법

- 2인이상 1개조를 편성하여 수렵
- 포획 지정동물 및 제한수량 준수
- 포획조수는 5일 이내 반드시 신고 후 승인표지(링) 부착
- 수렵금지구역에서는 포획금지

## ○ 엽건사용

- 2인 1조당 엽건 1마리만 사용
- 허가기관이 표기된 끈·링 부착
- 민가지역 통과시 엽건 끈을 잡고 이동 및 일반인에게 접근금지

## ○ 엽 구 : 엽총(라인폴총 제외), 공기총, 그물, 활(석궁제외)

## 8. 사용료의 반환

## ○ 순환수렵장 개장 이후(2008.11.01)에는 사유 불문 사용료 반환 불가

## 9. 관리소의 소재지

○ 10개소(본청 1개소, 읍면 9개소)

| 관리소 명칭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비 고 |
|-----------------|---------------------|--------------|-----|
| 정선군청<br>(환경산림과) |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7번지   | 033-560-2331 |     |
| 정선읍사무소          |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10-1번지 | 033-560-2602 |     |
| 고한읍사무소          |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80-4번지  | 033-560-2612 |     |
| 사북읍사무소          |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17-3번지 | 033-560-2622 |     |
| 신동읍사무소          |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794번지   | 033-560-2632 |     |
| 동면사무소           | 정선군 동면 화암리 372-3번지  | 033-560-2642 |     |
| 남면사무소           | 정선군 남면 문곡리 103-1번지  | 033-560-2652 |     |
| 북면사무소           | 정선군 북면 여량리 305-3번지  | 033-560-2662 |     |
| 북평면사무소          |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222-2번지 | 033-560-2672 |     |
| 임계면사무소          |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723번지   | 033-560-2682 |     |

## 10. 수렵대상자 선정 및 포획승인권 발급

포획승인권은 수렵장 사용료 입금순으로 수렵 허가.

□ 입금일자 : 2008. 10. 24 ~ 최대수용인원 접수만료시까지

※ 입금시간 : 09:30 ~ 17:00

□ 입금계좌 : 농협 224-01-017788(정선군청)

※ 입금자명은 포획승인을 받고자 하는 본인의 이름으로 입금하여야 함

※ 동명이인 확인을 위하여 입금자명 뒤에 주민번호 앞자리 6자리 기재  
(예) 김수렵(123456)

※ 타인명의로 입금시는 포획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음

※ 착오로 인하여 과다하게 사용료가 입금될시는 잔액은 환불

□ 포획승인

○ 신청서 접수 : 수렵장 사용료 입금자에 한하여 포획승인서 접수 및 교부

- 접수기간 : 2008. 10. 24 ~ 최대수용인원 접수만료시까지

- 접수장소 : 정선군청 환경산림과

- 접수방법 : 직접방문, 우편, FAX(033-560-2019)

- 제출서류 : 신청서식 1부, 수렵면허증 사본 1부, 수렵보험가입영수증 1부,  
사용료입금표 1부

## 11. 기타 문의사항

○ 문의전화 : 정선군청 환경산림과 (033) 560-2331, 2345, 2347

○ 주 소 : (우233-804)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7번지



## 정선군고시 제2008-99호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점·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 10. 28.  
정 선 군 수

|                                                        |                 |                               |              |                              |
|--------------------------------------------------------|-----------------|-------------------------------|--------------|------------------------------|
| 시행<br>(점용·<br>사용)<br>자                                 | 상호 및 명칭         | SK네트웍스(주)                     |              |                              |
|                                                        | 대 표 자           | 대표: 정만원                       | 주 소          | 대전시 서구 둔산동 924번지<br>청사프라자 5층 |
| 하 천 명                                                  |                 | 공유수면                          |              |                              |
| 공사<br>(점용·<br>사용)<br>개요                                | 위 치             | 정선군 동면 석곡리 262-1구(258번지선)     |              |                              |
|                                                        | 허가량             | A = 4 m <sup>2</sup>          | 폐천부지<br>예상면적 | □□없음□□                       |
|                                                        | 기 간             | 2008년 10월 28일 ~ 2011년 12월 31일 |              |                              |
|                                                        | 목 적<br>및<br>사 유 | 통신용 중계기 설치(전주 1본 높이 16m)      |              |                              |
| 기타: 공유수면점·사용 허가번호 제2008 - 10호<br>(2008년 10월 28일 허가처리됨) |                 |                               |              |                              |

## 정선군고시 제2008-100호

## 고 시 문

하천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 10. 28.

정 선 군 수

|                     |                 |                                                |                      |                   |
|---------------------|-----------------|------------------------------------------------|----------------------|-------------------|
| 시행<br>(점용·사용)<br>자  | 상호 및 명칭         |                                                |                      |                   |
|                     | 대 표 자           | 정선군수<br>(건설도시과장)                               | 주 소                  |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7번지 |
| 하 천 명               |                 | 한강(지방 1급하천)                                    |                      |                   |
| 공사<br>(점용·사용)<br>개요 | 위 치             | 정선군 정선읍 용탄리 483번지 일원                           |                      |                   |
|                     | 면 적             | A=4,021m <sup>2</sup><br>V=5,525m <sup>3</sup> | 폐천<br>부지<br>예상<br>면적 | ‘없 음’             |
|                     | 기 간             | 2008년 10월 24일 ~ 2009년 06월 30일                  |                      |                   |
|                     | 목 적<br>및<br>사 유 | 군도6호선(예미~용탄)도로 확·포장공사 성토에 필요한<br>토석채취          |                      |                   |

정선군고시 제2008-101호

## 하 천 점 용 허 가 고 시

하천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 10. 30.

정 선 군 수

|                     |                 |                              |                      |       |
|---------------------|-----------------|------------------------------|----------------------|-------|
| 시행<br>(점용·사용)<br>자  | 상호 및 명칭         |                              |                      |       |
|                     | 대 표 자           | 정선군수(건설도시과장)                 | 주 소                  |       |
| 하 천 명               |                 | 봉산천(지방2급)                    |                      |       |
| 공사<br>(점용·사용)<br>개요 | 위 치             | 정선군 북면 구절리 367-3천, 산43-1구거   |                      |       |
|                     | 면 적             | 434㎡                         | 폐천<br>부지<br>예상<br>면적 | ‘없 음’ |
|                     | 기 간             | 2008. 10. 29 ~ 2008. 12. 31  |                      |       |
|                     | 목 적<br>및<br>사 유 | 군도 9호선(상자개)재해예방공사에 따른 하천부지점용 |                      |       |
| ※ 설계도서 : 별도보관       |                 |                              |                      |       |

## 정선군고시 제2008-102호

## 2008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08. 10. 31.

정 선 군 수

## 1. 2008년 개별공시지가의 적정가격 고시

가. 고시(가격)기준일 : 2008년 7월 1일 기준

나. 개별공시지가 필지 수 : 1,401필지

다. 고시사항 : 개별필지 단위면적( $m^2$ )당 가격(원)(필지별 내역 별첨)

라. 고시방법 : 고시문 게시

## 2. 이의신청방법

가. 기 간 : 2008. 11. 1 ~ 2008. 11. 30(30일간)

나.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다. 제 출 처 : 정선군청 세무회계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민원실

라. 제출방법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와 가격을 제시하여제출

## 3. 기타사항

의문사항에 대하여 군청 세무회계과 과표팀 (☎ 033-560-2455, 2284 E-mail : [mun0919@js.go.kr](mailto:mun0919@js.go.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

|                                                                                                                                                                                                                          |           |          |          |                         |  |
|--------------------------------------------------------------------------------------------------------------------------------------------------------------------------------------------------------------------------|-----------|----------|----------|-------------------------|--|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           |          |          | 처 리 기 간                 |  |
|                                                                                                                                                                                                                          |           |          |          | 이의신청기간이<br>만료된 날로부터 30일 |  |
| 이 의<br>신청인                                                                                                                                                                                                               | ① 성 명     |          | ② 주민등록번호 |                         |  |
|                                                                                                                                                                                                                          | ③ 주 소     | (전화번호: ) |          |                         |  |
|                                                                                                                                                                                                                          | ④ 소유자와의관계 |          |          |                         |  |
| 대 상<br>토 지                                                                                                                                                                                                               | ⑤ 소재지및지번  | (일련번호: ) |          |                         |  |
|                                                                                                                                                                                                                          | ⑥ 지 목     |          | ⑦ 실제이용현황 |                         |  |
|                                                                                                                                                                                                                          | ⑧ 지 가     |          |          |                         |  |
| 신 청<br>요 지                                                                                                                                                                                                               |           |          |          |                         |  |
| 신 청<br>이 유                                                                                                                                                                                                               |           |          |          |                         |  |
| <p>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br/>하여 2008년 10월 31일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br/>이 이의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 (서명 또는 인)</p> <p><b>정선군수</b> 귀하</p> |           |          |          |                         |  |
| ※ 구비서류<br>이의신청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          |          | 수 수 료                   |  |
|                                                                                                                                                                                                                          |           |          |          | 없 음                     |  |

## 정선군고시 제2008-103호

##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고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특성 및 비교표준지 오류를 정정하기 위하여 정선군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결정·고시합니다.

2008. 10. 31.

정 선 군 수

## 1. 개별공시지가의 정정 결정·고시

- 가. 고시(가격)기준일 : 2005년~2008년도 개별공시지가 기준일
- 나. 개별공시지가 필지수 :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360번지 외7필지
- 다. 고시사항 : 개별필지 단위면적(m<sup>2</sup>)당 가격(원)
- 라. 고시방법 : 고시문 게시

## 2. 이의신청방법

정정 결정·고시 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2008. 11. 30. 까지 정선군청 세무회계과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기타사항

의문사항에 대하여 정선군청 세무회계과 과표팀(☎ 033. 560-2455, 228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고시 내역(정선군)

(단위 : m<sup>2</sup>/원)

| 일련<br>번호 | 년 도<br>기준일     | 법정리 | 지번  | 지목 | 면적     | 결정가격<br>(당초가격) | 주요정정<br>내 용         | 검증가격   | 부동산평가위원회 |      | 정 정<br>결정고시가격 | 비고<br>(지리적 위치) |
|----------|----------------|-----|-----|----|--------|----------------|---------------------|--------|----------|------|---------------|----------------|
|          |                |     |     |    |        |                |                     |        | 심의가격     | 심의결과 |               |                |
| 1        | 2005<br>1. 1기준 | 애산리 | 360 | 전  | 3,352  | 15,100         | 토지특성및 비교<br>표준지적용오류 | 1,000  | 1,000    | 원안통과 | 1,000         | 정선역인근          |
| 2        | 2006<br>1. 1기준 | 애산리 | 360 | 전  | 3,352  | 15,100         | “                   | 1,000  | 1,000    | “    | 1,000         | “              |
| 3        | 2007<br>1. 1기준 | 애산리 | 360 | 전  | 3,352  | 15,100         | “                   | 1,000  | 1,000    | “    | 1,000         | “              |
| 4        | 2008<br>1. 1기준 | 애산리 | 360 | 전  | 3,352  | 15,100         | “                   | 1,200  | 1,200    | “    | 1,200         | “              |
| 5        | 2005<br>1. 1기준 | 사북리 | 248 | 전  | 23,775 | 35,500         | “                   | 10,000 | 10,000   | “    | 10,000        | 사북화장장인근        |
| 6        | 2006<br>1. 1기준 | 사북리 | 248 | 전  | 23,775 | 35,500         | “                   | 11,000 | 11,000   | “    | 11,000        | “              |
| 7        | 2007<br>1. 1기준 | 사북리 | 248 | 전  | 23,775 | 35,500         | “                   | 12,000 | 12,000   | “    | 12,000        | “              |
| 8        | 2008<br>1. 1기준 | 사북리 | 248 | 전  | 23,775 | 35,500         | “                   | 13,000 | 13,000   | “    | 13,000        | “              |

## 정선군공고 제2008-593호

정선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 하고자 함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 10. 14.

정 선 군 수

## 정선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 「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기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을 폐지하면서 오수·분뇨의 처리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하수도법』에 규정하는 등 『하수도법』의 전부 개정으로 「정선군 하수도 사용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새로이 정비·규정하고, 현행 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공공하수도사용개시 등의 신고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
- 공공하수도의 일시사용 및 점용허가 허가, 배수설비 설치신청, 공사신청의 취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조례 제1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의 범위를 규정
- 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 급수외의 사용자 하수배출량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함
  - － 계측기가 설치된 사용자 및 설치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오수배출량의 인정 및 조사방법
- 하수도사용료 및 원인자 부담금의 납부고지와 징수방법, 각종 사용료, 점용료, 기타부담금에 대한 체납시 징수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
- 하수도사용료의 조정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
-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의 과오납금에 대한 충당 및 환불 청구시 처리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함

### 3. 의견 제출

이 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 상하수도 사업소 하수시설팀으로 우편 또는 FAX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다. 보내실곳

－ 주 소: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828-2번지

－ 받는이 : 정선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팀 유상환

－ 우편번호 : 233-807

－ FAX : 033-560-2940

라. 문의사항 : ☎ 033-560-2530 유상환

붙 임 : 정선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안」 1부

## 정선군 규칙 제 호

## 정선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정선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정선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선군 하수도 사용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정선군 하수도 사용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
3.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량 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
4.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 변경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

②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량 신고와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량 신고는 매 월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양에 의한다.

④조례 제17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20퍼센트 이상 차이가 있을 때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일시 사용허가 신청)**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 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 사용자가 하수 관거를 유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원인자 부담금을 사전에 예치하여야 하며, 공사완료시 소속 공무원이 조사 산정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4조(점용허가 신청)** ①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점용자가 공작물을 설치한 때에는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배수설비 설치신청)** ①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신청자는 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공사신청의 취하)** ①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을 한 자가 이를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공사취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사취하신청을 받은 경우라도 공익을 저해하거나 기타 취하신청 사유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취하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③군수는 공사취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려사유가 없는 한 취하 시까지 소요된 제반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의 환불통지를 하고 1월 이내에 환불하여야 한다.

**제7조(경미한 공사)** 조례 제12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로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옥내배수 설비공사
2. 배수설비의 준설·보수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공사
3. 내경 100밀리미터 이하의 연장이 3미터 미만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개수
4. 배수설비중 오수받이의 설치 및 개수

**제8조(상수도 급수이외의 사용자 하수배출량 인정)** ①계측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산정은 「정선군 수도급수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 또는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의하여 자동모터펌프 양수능력과 시간계 또는 전력계에 의한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가. 시간계에 의한 산정 : 1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양수시간

나. 전력계에 의한 산정 : 1월간 사용량 = 전력키로와트당 출수량 × 1월간 전력 사용량

②계측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의한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
2.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 사용자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3. 가정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인구 1인당 월 4세제곱미터로 산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 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으로 산정한다.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월의 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 조정량은 계측기 교체 실시 후 최초 점검시에 일괄계산 조정한다.

**제9조(계측기의 검정시험)** ①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하여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 또는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③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에는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정선군 수도급수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사용료 등 고지와 징수방법)** ①하수도사용료는 「정선군 수도급수조례」의 수도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하고 수도사용료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의 하수도 사용료는 별도 고지를 할 수 있다.

**제11조(원인자부담금 납부시기 및 방법)** ①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은 공사착공일로부터 완공 전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②원인자부담금은 군수가 발부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연체금과 납입독촉)** ①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을 납입기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두고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 사용료의 경우 급수 사용료와 동시에 발부하고, 급수사용료와 별도 고지하는 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 부담금 등의

경우 따로 고지서를 발부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 발부 후에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13조(사용료의 조정)** ①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상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모든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공업용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 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조정은 제8조 제4항을 준용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배수중지 처분된 자
2. 「정선군 수도급수조례」에 의하여 급수중지 또는 정수 처분된 자
3.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다음달 사용량에 정산하거나 환불 또는 추징한다.

○ 경정 사용기간 = 기 조정기간 × 100/100± 2

⑥2호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 가정주택(1가구 2세대 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개량함으로써 요금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한다.

1.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으로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2. 일반가정용 사용량 중 2가구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동일가구 입증서류(주민등록 등본)를 증거로 세대별로 인정 가구분할 조정할 수 있다.

⑦업종을 달리하는 2이상의 업소가 지하수, 하천수 등을 동일한 양수시설에 의하여 급수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요금산정은 오수 발생량이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한다.

**제14조(이의신청)** ①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조사서에 의하여 소정 기일내에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의신청 사항을 결정하고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과오납금 충당 및 환불)** ①군수는 사용료 등의 부과취소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 징수금에서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 없이 납부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환불금액, 이유, 지급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과오납금을 충당한 경우에도 충당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불은 당해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 폐쇄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불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과오납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료 등 감면)** ①군수는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1.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감면

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 지역의 경우 : 면제

나. 무허가건물 철거지역의 경우 : 면제

다.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불출수되어 수도요금에 감면된 지역의 경우 : 면제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인 경우 : 10세제곱미터 이내 사용량에 대하여 감면

마. 2세대이하 거주하는 가구로서 하수배출을 위한 자가펌프시설을 설치한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대하여 감면

바. 조례 제7조에 따라 중수도 및 하수처리 재이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대하여 감면

2.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 면제

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 지역의 대상자 : 면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감면 받은 자는 신청 당시의 감면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제1항의 감면조치를 받을 수 있다.
- ④제1항제1호의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자가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주소·성명·반입량 등에 대하여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⑥군수는 분뇨 등 관련영업자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청소를 하였을 때는 수집 또는 청소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군수가 확인한 후 분뇨 등 관련영업자에게 감면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⑦제2항의 감면신청에 의한 감면은 신청서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하며, 공동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제17조(자료제출 명령)**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공공하수도 사용자 및 점용자등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일시사용신고를 한 경우
2.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배출량을 조사할 경우
3. 조례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산정할 경우
4.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한 경우

**제18조(위탁징수)** 하수도사용료 징수는 타 회계에 위탁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 『정선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별지 제1호서식]

## 공공하수도 사용 신고서

|                  |             |                     |                   |       |                   |            |                   |
|------------------|-------------|---------------------|-------------------|-------|-------------------|------------|-------------------|
| 사<br>용<br>자      | 관리번호        |                     |                   | 업 태   |                   |            |                   |
|                  | 주 소         |                     |                   | 상 호   |                   |            |                   |
|                  | 대표자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
| 신<br>고<br>사<br>항 | 신고유형        | 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 기타 |                   |       |                   |            |                   |
|                  | 사용년월일       | 년 월 일               |                   |       |                   |            |                   |
|                  | 배 출 량       | 생활하수                | m <sup>3</sup> /인 | 사업장폐수 | m <sup>3</sup> /인 |            |                   |
|                  | 급수실태        | 사용인구                | 인                 | 연 건 평 | m <sup>2</sup>    |            |                   |
|                  | 상 수 도       | 수전번호                |                   | 업 중   |                   | 월평균<br>사용량 | m <sup>3</sup> /월 |
|                  | 기 타<br>양수시설 | 유 형                 |                   |       |                   |            |                   |
|                  |             | 규 격                 |                   |       |                   |            |                   |
|                  |             | 대 수                 |                   |       |                   |            |                   |
|                  |             | 구 경                 |                   |       |                   |            |                   |
|                  |             | 양수능력                |                   |       |                   |            |                   |
| 기 타<br>참고사항      |             |                     |                   |       |                   |            |                   |

「정선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정선군수 귀하

첨부서류 : 위치도 1부.

[별지 제2호서식]

## 지하수등의 사용량 신고서

|                  |       |                   |                |       |                |  |
|------------------|-------|-------------------|----------------|-------|----------------|--|
| 사<br>용<br>자      | 관리번호  |                   |                | 업 태   |                |  |
|                  | 주 소   |                   |                | 상 호   |                |  |
|                  | 대표자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 양<br>수<br>시<br>설 | 모터규격  | HP                |                | 설치개소수 | 대              |  |
|                  | 설치대수  | 대                 |                | 구 경   | m/m            |  |
|                  | 양수능력  | m <sup>3</sup> /h |                | 기 타   |                |  |
| 신<br>고<br>내<br>용 | 용 도   |                   |                |       |                |  |
|                  | 사용기간  |                   |                |       |                |  |
|                  | 사 용 량 | 일간                | m <sup>3</sup> | 월간    | m <sup>3</sup> |  |
|                  | 비 고   |                   |                |       |                |  |

「정선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정선군수 귀하

첨부서류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

[별지 제3호서식]

##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                                                                                                                                                                                   |          |    |         |                   |              |               |
|-----------------------------------------------------------------------------------------------------------------------------------------------------------------------------------|----------|----|---------|-------------------|--------------|---------------|
| 사<br>용<br>자                                                                                                                                                                       | 관리번호     |    |         | 업 태               |              |               |
|                                                                                                                                                                                   | 주 소      |    |         | 상 호               |              |               |
|                                                                                                                                                                                   | 대표자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 감<br>수<br>량                                                                                                                                                                       | 제품명      | 단위 | 월간생산량   | 물함수량(m³)<br>(비율%) | 물사용량<br>(m³) | 기타감수량<br>(m³) |
|                                                                                                                                                                                   |          |    |         |                   |              |               |
|                                                                                                                                                                                   |          |    |         |                   |              |               |
|                                                                                                                                                                                   |          |    |         |                   |              |               |
| 하<br>수<br>도<br>사<br>용<br>량                                                                                                                                                        | 용수총량(m³) |    | 감수량(m³) |                   | 하수배출량(m³)    |               |
|                                                                                                                                                                                   |          |    |         |                   |              |               |
|                                                                                                                                                                                   |          |    |         |                   |              |               |
|                                                                                                                                                                                   |          |    |         |                   |              |               |
| <p>「정선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br/>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고인 (인)</p> <p>정선군수 귀하</p> |          |    |         |                   |              |               |
| 첨부서류 : 입증서류                                                                                                                                                                       |          |    |         |                   |              |               |

[별지 제4호서식]

## 하수도 사용양태 변경신고서

|             |       |  |        |     |      |  |
|-------------|-------|--|--------|-----|------|--|
| 사<br>용<br>자 | 관리번호  |  |        | 업 태 |      |  |
|             | 주 소   |  |        | 상 호 |      |  |
|             | 대표자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 양<br>태<br>별 | 변경일자  |  |        |     |      |  |
|             | 현 행   |  |        |     |      |  |
|             | 변 경   |  |        |     |      |  |
|             | 변경사유  |  |        |     |      |  |

「정선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정선군수 귀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

[별지 제5호서식]

## 공공하수도 일시사용허가 신청서

|      |             |     |                |     |                |  |
|------|-------------|-----|----------------|-----|----------------|--|
| 신청인  | 주 소         |     |                | 상 호 |                |  |
|      | 대표자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 신청내역 | 공사명         |     |                |     |                |  |
|      | 사용장소        |     |                |     |                |  |
|      | 사용기간        |     |                |     |                |  |
|      | 사용목적        |     |                |     |                |  |
|      | 공공하수도의 복구방법 |     |                |     |                |  |
|      | 사용수         |     |                |     |                |  |
|      | 배출량         | 일평균 | m <sup>3</sup> | 월평균 | m <sup>3</sup> |  |

「정선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정선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위치도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



[별지 제7호서식]

## 공공하수도 점용 · 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

|                  |          |     |        |  |      |  |
|------------------|----------|-----|--------|--|------|--|
| 신<br>청<br>인      | 주 소      |     |        |  | 상 호  |  |
|                  | 대표자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 신<br>청<br>내<br>역 | 설 치 목 적  |     |        |  |      |  |
|                  | 설 치 장 소  |     |        |  |      |  |
|                  | 공사실시방법   |     |        |  |      |  |
|                  | 공사내용(구조) |     |        |  |      |  |
|                  | 공 사 기 간  | 착 공 |        |  |      |  |
|                  |          | 준 공 |        |  |      |  |

「정선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정선군수 귀하

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

[별지 제8호서식]

| 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                                                                                                                                                  |                    |      |       |      |      | 처리기한 |
|--------------------------------------------------------------------------------------------------------------------------------------------------------------------|--------------------|------|-------|------|------|------|
|                                                                                                                                                                    |                    |      |       |      |      | 14일  |
| 신<br>청<br>인                                                                                                                                                        | 주 소                |      |       |      | 상 호  |      |
|                                                                                                                                                                    | 주민등록번호             |      | 성 명   |      | 전화번호 |      |
| 공사종별                                                                                                                                                               | 신축, 개축, 증축, 수선, 기타 |      |       |      |      |      |
| 시공장소                                                                                                                                                               |                    |      |       |      |      |      |
| 공사내용                                                                                                                                                               |                    |      |       |      |      |      |
| 급수시설                                                                                                                                                               | 구 경                | m/m  | 모터펌프  | 대    | 기 타  |      |
| 배 출 량                                                                                                                                                              | 생활하수               | m³/일 | 사업장폐수 | m³/일 | 기 타  |      |
| <p>「정선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인)</p> <p>정선군수 귀하</p> |                    |      |       |      |      |      |
| <p>첨부서류 : 1. 위치도(약도) 1부.</p> <p style="padding-left: 40px;">2. 지적도 1부.</p> <p style="padding-left: 40px;">3. 건축허가증 사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p>                            |                    |      |       |      |      |      |

[별지 제9호서식]

##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

|             |     |                    |        |      |      |  |
|-------------|-----|--------------------|--------|------|------|--|
| 신<br>청<br>인 | 주 소 |                    |        |      | 상 호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 공 사 종 별     |     | 신축, 개축, 증축, 수선, 기타 |        |      |      |  |
| 신 청 일 자     |     |                    |        |      |      |  |
| 시 공 장 소     |     |                    |        |      |      |  |
| 공 사 비       |     |                    |        | 납부일자 |      |  |
| 취 하 사 유     |     |                    |        |      |      |  |

「정선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정선군수 귀하

첨부서류 : 영수증 사본 1부.

[별지 제10호서식]

|                                                                                                                                                     |            |               |              |                      |             |            |            |
|-----------------------------------------------------------------------------------------------------------------------------------------------------|------------|---------------|--------------|----------------------|-------------|------------|------------|
| 하수도 사용료 등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 통지서                                                                                                                         |            |               |              |                      |             |            | 처리기간       |
|                                                                                                                                                     |            |               |              |                      |             |            | 즉 시        |
| 관리자의                                                                                                                                                |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 소          |               |              |                      |             |            |            |
| 과 오 납 액                                                                                                                                             | 월 분        | 정당납부<br>(납입)액 | 기납부<br>(납입)액 | 과 오<br>납 액           | 과오납<br>월, 일 | 일 시<br>금 액 | 환 불<br>금 액 |
|                                                                                                                                                     |            |               |              |                      |             |            |            |
|                                                                                                                                                     | 과오납<br>합계액 |               |              | 충당후잔<br>액<br>(환 불 액) |             |            |            |
| 충 당 금 액                                                                                                                                             | 월 분        | 미납금액          | 충당금액         | 과 오 납 된 사 유          |             |            |            |
|                                                                                                                                                     |            |               |              |                      |             |            |            |
|                                                                                                                                                     | 충 당<br>금 액 |               |              | 충당후의<br>미 납 액        |             |            |            |
| <p>「정선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br/>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정 선 군 수</p> |            |               |              |                      |             |            |            |

[별지 제11호서식]

|                                                                                                                                                                           |     |  |        |      |      |
|---------------------------------------------------------------------------------------------------------------------------------------------------------------------------|-----|--|--------|------|------|
| <b>하수도 사용료 등 과오납금 환불 청구서</b>                                                                                                                                              |     |  |        |      | 처리기간 |
|                                                                                                                                                                           |     |  |        |      | 즉 시  |
| 관리자의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      |
| 년 도 월 분                                                                                                                                                                   | 내 용 |  | 과오납 금액 | 환불이자 | 청구금액 |
|                                                                                                                                                                           |     |  |        |      |      |
|                                                                                                                                                                           |     |  |        |      |      |
| <p>「정선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청구자 : 주 소</p> <p style="text-align: center;">성 명 (인)</p> <p>정 선 군 수 귀하</p> |     |  |        |      |      |

|                                                                                                           |     |  |        |      |      |
|-----------------------------------------------------------------------------------------------------------|-----|--|--------|------|------|
| <b>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 영수증</b>                                                                                 |     |  |        |      |      |
| 년 도 월 분                                                                                                   | 내 용 |  | 과오납 금액 | 환불이자 | 영수금액 |
|                                                                                                           |     |  |        |      |      |
|                                                                                                           |     |  |        |      |      |
| <p>위의 금액을 영수함.</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영수자 성명 (인)</p> |     |  |        |      |      |

[별지 제12호서식]

##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신청서

|                  |       |  |        |     |      |  |
|------------------|-------|--|--------|-----|------|--|
| 사<br>용<br>자      | 관리번호  |  |        | 업 태 |      |  |
|                  | 주 소   |  |        | 상 호 |      |  |
|                  | 대표자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 신<br>청<br>내<br>용 | 감면기간  |  |        |     |      |  |
|                  | 감면사유  |  |        |     |      |  |

「정선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정선군수 귀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

[별표 1] (제8조 관련)

## 구 경 별 출 수 량 기 준 (내경)

| 구 경<br>(m/m) | 최대출수량<br>(m³/분) | 표준출수량<br>(m³/분) | 시 간 당 출 수 량 |               |
|--------------|-----------------|-----------------|-------------|---------------|
|              |                 |                 | 최대 m³/hr    | 표준 m³/hr      |
| 20           | 0.03            | 0.025           | 1.80        | 1.5           |
| 25           | 0.06            | 0.05            | 3.60        | 3             |
| 32           | 0.10            | 0.08            | 6           | 4.80          |
| 38           | 0.15            | 0.13            | 9           | 7.80          |
| 50           | 0.26            | 0.20            | 15.60       | 12            |
| 65           | 0.45            | 0.30 ~ 0.40     | 27          | 18 ~ 24       |
| 75           | 0.62            | 0.50 ~ 0.53     | 37.20       | 30 ~ 31.80    |
| 100          | 1.20            | 0.85 ~ 1.10     | 72          | 51 ~ 66       |
| 125          | 1.90            | 1.40 ~ 1.70     | 114         | 84 ~ 102      |
| 150          | 2.70            | 2.40 ~ 2.60     | 162         | 126 ~ 156     |
| 175          | 3.80            | 3.30            | 228         | 198           |
| 200          | 5               | 4 ~ 4.30        | 300         | 240 ~ 258     |
| 250          | 8               | 6 ~ 7.50        | 480         | 360 ~ 450     |
| 300          | 12              | 9 ~ 11          | 720         | 540 ~ 660     |
| 350          | 16              | 14              | 960         | 840           |
| 400          | 21              | 17 ~ 20         | 1,260       | 1,020 ~ 1,200 |
| 450          | 27              | 25              | 1,620       | 1,500         |
| 500          | 33              | 30              | 1,980       | 1,800         |

## 정선군공고 제2008-594호

정선군 배수설비공사 대행규칙을 제정 하고자 함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 10. 14.

정 선 군 수

## 정선군 배수설비공사 대행규칙 「안」 입법예고

## 1. 제정이유

개정 시행된 「하수도법」 및 「정선군 하수도사용조례」 에서 정한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의 지정 및 배수설비공사 시공에 따른 시공 및 책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의 신청, 요건, 결격사유 및 지정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는 보증금 300만원을 군에 예치하여 하자보수 또는 손해 배상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가 공사를 하는 경우의 공사시공 요령과 대행 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정지 및 재시공명령, 이를 거부할 경우 조치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함.
- 공사 준공시 군수의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배수설비사용자에게 인도할 수 없으며, 하자보수 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하자발생시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도록 함.
- 배수설비 대행 업무에 관한 자산, 자재 및 시공 상황의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 대행업의 지정 요건의 변동이 있을 시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규정.
-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의 지정 취소 및 보수책임 등에 대한 규정 마련.

## 3. 의견 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 상하수도 사업소 하수시설팀으로 우편 또는 FAX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곳  
    - 주 소: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828-2번지  
    - 받는이 : 정선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팀 유상환  
    - 우편번호 : 233-807  
    - FAX : 033-560-2940  
마. 문의사항 : ☎ 033-560-2530 유상환

붙 임 : 정선군 배수설비공사 대행규칙 「안」 1부

## 정선군 규칙 제 호

## 정선군 배수설비공사 대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하수도사용조례」 제12조제1항의 배수설비공사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대행업”이라 함은 정선군 하수도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배수설비 공사를 대행할 수 있는 업을 말한다.
- ②“대행업자”라 함은 이 규칙에 의하여 대행업을 지정받고 대행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신청)**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미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지정요건)** 대행업자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2. 별표 1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지정을 취소당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6조(지정기간)** ①대행업지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 ②지정기간 만료후 계속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연장)신청서를 지정기간 만료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③군수는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사실적이 우수한 자에 한하여 재지정할 수 있다. 다만, 연장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지정서 등 교부)** ①군수는 대행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②군수는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1건당 1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재지정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8조(보증금 예치 등)** ①대행업자는 군수로부터 대행업자로 지정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보증금 300만원을 군에 예치하여야 한다.

- ②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군 또는 배수설비공사 신청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이를 이행 또는 배상하지 않을 때에는 제1항의 보증금으로 군 또는 다른 대행업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예치된 보증금이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손해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한다.

④보증금은 대행업 지정의 소멸 또는 취소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예치된 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대행업자에게 반환한다.

**제9조(공사시공 방법)** 대행업자는 군의 선량한 공사대행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사용되는 일체의 재료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공사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공사를 제3자에게 하청하지 못한다.
4. 공사현장에는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제10조(공사정지 재시공명령 등)** ①군수는 공사를 수급한 대행업자가 그 공사 시공에 부적당하거나 시공의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대행업자가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종업원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지휘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2조(준공검사)** ①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전에 배수설비 사용자에게 인도할 수 없다.

②준공검사를 필한 후 배수설비 사용자등에게 배수설비 유지관리 방법 등을 주지시켜야 한다.

**제13조(공사의 하자책임)** ①공사를 대행하는 대행업자가 시행한 배수설비공사는 준공검사일부터 1년간 대행업자가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②군수는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당해 대행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③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대행업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하자보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대행업무에 관한 조사보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로부터 대행 업무에 관한 자산, 자재 및 시공 상황의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신고의무)** ①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중의 자가 개업하였을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

3. 종업원의 이동이 있을 때

4. 기타 업체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

②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정서를 반납후 재교부 받아야 한다.

**제16조(지정취소)**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의 지정 요건에 미달되었을 때

2.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제8조의 보증금을 기한내에 예치하지 아니한 때

4.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후 지정된 기간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한 때

**제17조(계속공사)** 공사시행중 지정의 취소를 당하거나 기타 사유로 지정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당해 공사에 한하여 계속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보수책임)** ①대행업자가 공사시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기존의 하수도 시설을 파손 또는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수를 태만히 한 때에는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받은 것으로 보며,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제4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서

○ 허가번호 : 제 호

○ 주 소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영업장소 :

○ 상 호 :

「정선군 배수설비공사 대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을 지정함.

허가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정 선 군 수

## [별표 1]

## 배수시설공사 대행업 지정기준(제4조제2호 관련)

| 구 분            | 기 준                                               |        |     |     | 비 고               |
|----------------|---------------------------------------------------|--------|-----|-----|-------------------|
| 자 산            | 개인 : 10,000,000원(평가액)<br>법인 : 20,000,000원 (불입자본금) |        |     |     |                   |
| 사 무 실<br>및 창 고 | 사무실 : 20㎡이상<br>창 고 : 10㎡이상                        |        |     |     | 허가자명의소유<br>(상호표시) |
| 전 화            | 1대 이상                                             |        |     |     |                   |
| 예 치 료          | 3,000,000원 이상                                     |        |     |     |                   |
| 구 분            | 기 준                                               |        |     |     |                   |
| 장비 및<br>공구류    |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엔진직결<br>양 수 기                                     | 50mm이상 | 대   | 1   | 개인 및<br>공동        |
|                | 콘크리트<br>깃 타 기                                     |        | 대   | 1   |                   |
|                | 함 마                                               |        | 대   | 1   |                   |
|                | 체인 부력                                             |        | 개   | 1   |                   |
|                | 콤팩트로라                                             |        | 대   | 1   |                   |

정선군공고 제2008-604호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08. 10. 21.

정 선 군 수

1. 조 례 명 :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사북 도사곡 휴양단지(산막)」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따른 경영수익증대효과를 도모하고자 사북 도사곡 휴양단지를 정선군시설관리공단으로 추가 위탁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도사곡 휴양단지 관리운영”을 신설함(안 제1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FAX 560-2592)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기획감사실(전화 560-22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정선군조례 제 호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에 6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도사곡 휴양단지 관리운영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공고 제2008-608호

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제정 입법예고

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08. 10. 22.

정 선 군 수

1. 조 례 명 : 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안』

2. 제정취지

○ 본 조례는 농업인의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업기계의 연중 사용빈도가 높은 부착형 기계류를 구입 농업인에게 임대하여 자가 구입비 경감과 경영안정화를 유도하고 고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정선군 농업인에게 부착형 농업기계류를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기준, 임대료, 장비관리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조례 제정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농업기술센터 ☎033-560-2555 Fax 562-3963)에게 서면제출 또는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붙임 : 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안』 1부.

정선군 조례 제 호

### 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대농업기계”란 농업인에게 임대하여 주는 농업기계를 말한다.
2. “임차인”이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임대농업기계를 임대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3. “임대료”란 임대농업기계를 임대할때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제3조(사업내용)**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기계 임대 및 임대료 징수
2. 농업기계의 운전·조작·정비기술교육
3. 임대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업무담당)** ①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농업기계업무를 관리 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 관리한다

② 군수는 소속 인원 중 담당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의 전문성을 위하여 농업기계분야 정비기능사 2급 (특수장비 자격증 포함)이상 자격소지 유경험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제5조(임대대상자)** 임대대상자는 정선군 관내에 소재한 농경지를 경작하고 대여신청일 현재 정선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제6조(임대기준)** ①임대기준은 임대신청 접수 순위에 따라 농가당 1회 1대를 기준으로 임대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농업기계 사용기간은 출고한 날과 입고한 날을 포함하여 3일 이내로 한다.
- ③농업기계의 출고 및 입고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로 한다.
- ④임차인이 농업기계를 사용 후 기계 입고일시에 입고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하고 1년간 재임대 계약을 할 수 없다.

**제7조(임대계약 및 출고)** ① 농업기계 임대시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마친 자에게 출고 하여야 한다.

1.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보유 기종 및 임대가능 여부를 확인 후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임대료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미리 납부하여야 하고 별지제3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등재 후 출고한다.
- ② 관리요원은 신청 농업인 입회하에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 후 농업기계를 출고하여야 한다.
1. 농업기계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점검
  2.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사용요령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제8조(임대료 등)** ① 군수는 임대농업기계의 구입가격, 농가부담 등을 감안하여 기종 별 임대료를 결정하고 매년 군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② 농업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대 및 기타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③ 납부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경우 : 전액
  2. 농업기계의 출고전 사용신청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전액
  3. 출고일 이후 사용완료에 따른 조기 입고의 경우 :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해당금액
  4.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 전액
- ④ 농업기계 임대료는 정선군 금고에 세입 조치한다.

**제9조 (임대계약의 취소)**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기간 중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임대계약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
  3. 농업기계를 이용하여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 ② 제1항의 임대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는 배상책임 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임대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반액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본인의 영농에 사용하고자하는 경우
2. 전액면제 : 재해복구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료를 감면(면제)를 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료 감면을 신청받은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승인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임대 농업기계의 반환 및 변상책임)** ①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농업기계 사용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임대한 농업기계는 작업종료 후 청소 등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 ③임대 농업기계를 반납 할 때에는 담당공무원에게 농업기계의 고장유무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④농업인이 임대한 농업기계에 대한 주의 또는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⑤농업기계 출고 후 발생한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등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

**제12조(장비관리 및 수리)** ①농업기계 임대사업 담당부서에서는 장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농업기계 수리를 위한 장비 및 공구·부속품의 비치하고 운영
2. 농업기계 출고전 이상유무 확인 및 사용요령 지도
3. 농업기계 입고시 작동상태 및 수량 확인
4. 농업기계의 점검·정비 및 구입확보 계획 수립
- ② 임대농업기계의 수리는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양도·대여금지)** 임대한 농업기계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 할 수 없다.

**제14조(임대농업기계의 매각 및 폐기)** 임대농업기계의 매각 및 폐기는 「정선군 물품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

|           |                     |      |     |
|-----------|---------------------|------|-----|
| 임대인       |                     | 임차인  |     |
| 정 선 군     |                     | 주 소  |     |
|           |                     | 성 명  |     |
|           |                     | 전화번호 | H-P |
| 임대차 농업기계  |                     |      |     |
| 농기계명      |                     | 수 량  |     |
| 부속작업기     |                     | 수 량  |     |
|           |                     | 수 량  |     |
|           |                     | 수 량  |     |
| 임대차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 |      |     |
| 임대료       | \ 원                 |      |     |
| 농업기계 사용계획 |                     |      |     |
| 기계명       |                     |      |     |
| 작업종류      |                     |      |     |
| 작업장소      |                     |      |     |
| 작업면적      | ha(일 평)             |      |     |

## 임대차 계약조건

1. 임대기간을 준수하고 지정일에 반드시 반환하며 깨끗이 세척 후 반납한다.
  2. 사용 후 보관시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할 때)
  3. 임차 후 발생한 농업기계의 분실·파손·고장에 대한 책임 및 수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4. 임대농업기계의 구조 및 성능을 변경하여서는 안됩니다.
  5. 임차인이 농업기계의 운반 및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6. 임대기간 중 농업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농작업상해공제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임차인은 임대농업기계를 대상으로 농업기계종합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함.
7. 임대농기계의 농작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영업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신청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임대승인을 취소합니다.

위와 같이 농업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주민번호 :

임 차 인 : (인)

정 선 군 수 귀 하

|      |      |                               |     |     |
|------|------|-------------------------------|-----|-----|
| 반납확인 | 점검사항 | ○ 점검결과 : 양호 · 요수리 · 부품교환 · 기타 |     |     |
|      | 반 납  | ○ 조치사항 :                      |     |     |
|      |      | 년 월 일 시                       | 확인자 | (인) |

[별지 제2호서식]

## 임대농업기계 관리대장

|      |   |
|------|---|
| 관리번호 | - |
|------|---|

|         |     |     |     |
|---------|-----|-----|-----|
| 구 입 금 액 |     |     |     |
| 계       | 국 비 | 도 비 | 군 비 |
| 원       |     |     |     |

|               |       |       |  |
|---------------|-------|-------|--|
| 구입 년월일        |       | 형 식 명 |  |
| 규 격           |       | 제조번호  |  |
| 성 능           |       |       |  |
| 주 요 특 징       |       |       |  |
| 제조회사<br>· 구입처 | 회 사 명 |       |  |
|               | 전화번호  |       |  |
|               | 홈 페이지 |       |  |

|           |             |
|-----------|-------------|
| 사 진       |             |
| 임 대 농 기 계 | 관 리 번 호 명 판 |
|           |             |

[별지 제3호서식]

## 임대농업기계 입출 관리대장

( )월

| 일자         | 보 유 기 종 별 현 황 |    |    |    |    |    |    |    |    |    |    |    |
|------------|---------------|----|----|----|----|----|----|----|----|----|----|----|
|            | “예”트 랙 터( )   |    |    |    |    |    |    |    |    |    |    |    |
|            | 임대            | 회수 | 소계 | 임대 | 회수 | 소계 | 임대 | 회수 | 소계 | 임대 | 회수 | 소계 |
| 1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11         |               |    |    |    |    |    |    |    |    |    |    |    |
| 12         |               |    |    |    |    |    |    |    |    |    |    |    |
| 13         |               |    |    |    |    |    |    |    |    |    |    |    |
| 14         |               |    |    |    |    |    |    |    |    |    |    |    |
| 15         |               |    |    |    |    |    |    |    |    |    |    |    |
| 16         |               |    |    |    |    |    |    |    |    |    |    |    |
| 17         |               |    |    |    |    |    |    |    |    |    |    |    |
| 18         |               |    |    |    |    |    |    |    |    |    |    |    |
| 19         |               |    |    |    |    |    |    |    |    |    |    |    |
| 20         |               |    |    |    |    |    |    |    |    |    |    |    |
| 21         |               |    |    |    |    |    |    |    |    |    |    |    |
| 22         |               |    |    |    |    |    |    |    |    |    |    |    |
| 23         |               |    |    |    |    |    |    |    |    |    |    |    |
| 24         |               |    |    |    |    |    |    |    |    |    |    |    |
| 25         |               |    |    |    |    |    |    |    |    |    |    |    |
| 26         |               |    |    |    |    |    |    |    |    |    |    |    |
| 27         |               |    |    |    |    |    |    |    |    |    |    |    |
| 28         |               |    |    |    |    |    |    |    |    |    |    |    |
| 29         |               |    |    |    |    |    |    |    |    |    |    |    |
| 30         |               |    |    |    |    |    |    |    |    |    |    |    |
| 31         |               |    |    |    |    |    |    |    |    |    |    |    |
| 월 별<br>누 계 |               |    |    |    |    |    |    |    |    |    |    |    |

\* ( )은 보유대수, 월별누계 = 전월누계+금월/전월누계 임.





[별지 제6호 서식]

## 농업기계 대여료 감면(면제) 신청서

|                 |                             |                 |             |  |
|-----------------|-----------------------------|-----------------|-------------|--|
| 신 청 자           | 주 소                         |                 |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전 화                         |                 | 휴대폰         |  |
| 신청기종            |                             |                 | 규격 및<br>모델명 |  |
| 부속작업기           |                             |                 |             |  |
| 부속자재            |                             |                 |             |  |
| 대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                 |             |  |
| 작업면적            | ha(논 : ha, 밭 : ha, 기타 : ha) |                 |             |  |
| 작업내용            |                             |                 |             |  |
| 대 여 료<br>납 부 액  | 원                           | 감면(면제)<br>신 청 액 | 원           |  |
| 감면(면제)<br>신청 사유 |                             |                 |             |  |
| 비 고             |                             |                 |             |  |

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에 의거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료의 감면(면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정 선 군 수 귀 하

[별지 제7호 서식]

## 농업기계 대여료 감면(면제) 승인서

|                   |                             |  |                 |   |
|-------------------|-----------------------------|--|-----------------|---|
| 신 청 자             | 주 소                         |  |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전 화                         |  | 휴 대 폰           |   |
| 신청기종              |                             |  | 규격 및 모델명        |   |
| 부속작업기             |                             |  |                 |   |
| 부속자재              |                             |  |                 |   |
| 대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  |                 |   |
| 작업면적              | ha(논 : ha, 밭 : ha, 기타 : ha) |  |                 |   |
| 작업내용              |                             |  |                 |   |
| 감면(면제)<br>신 청 액   | 원                           |  | 감면(면제)<br>승 인 액 | 원 |
| 감면(면제)<br>승 인 사 유 |                             |  |                 |   |
| 비 고               |                             |  |                 |   |

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에 의거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료의 감면(면제)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 귀하

## 정선군공고 제2008-609호

##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08. 10. 22.

정 선 군 수

## 1. 조 례 명 :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개정취지

○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여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지방공무원법 제51조를 근거하여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안 제5조제3항 신설)

##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FAX 560-2590)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전화 560-22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붙임 :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정선군조례 제 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친절·공정”을 “친절”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정선군공고 제2008-611호

## 정선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08. 10. 23.

정 선 군 수

## 1. 조 례 명 : 정선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개정취지

- 이장 사기양양에 필요한 각종 자율사업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 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이장의 임무수행 등 지원」에 관한 항목 구체적 명시
- － 이장 체육대회, 수련대회, 단합대회 등 문화·체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명문화
  - －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
  - － 타시군구 이통장과의 문화·체육·결연 등 교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

##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FAX 560-2590)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전화 560-22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참고사항

붙임 정선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정선군조례 제 호

### 정선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제5호,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체육대회, 수련대회, 단합대회 등 문화·체육행사 지원
5. 종량제 쓰레기봉투 지급
6. 타시군구 이통장과의 문화·체육·결연 등 교류활동 지원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췌

####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04.3.12, 2005.8.4, 2008.2.29>

1.~3. (생략)

####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다.~마. (생략)

## 정선군공고 제2008-612호

##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우리군 관내 도로 및 타인의 토지 등에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 저해 및 군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자동차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내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2008. 10. 23.

정 선 군 수

1. 강제처리대상차량 : “불입내역 참조”

2. 강제처리(폐차)예정일 : 2008년 11월 22일 이후

3. 보관 및 강제폐차 장소 : 관허폐차장

4. 공 고 기 간 : 2008년 10월 23일 ~ 2008년 11월 22일(30일)

5.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자동차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본 공고기간 만료시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자진회수 또는 폐차)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폐차)됩니다.

나. 자동차 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통고처분(벌칙금 20만원~150만원)되며, 처분에 불응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 송치되어 형사처벌(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으로써 귀하의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 압류 및 저당권설정 등 이해관계인은 상기 기한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한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폐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건설도시과(☎033-560-25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선군공고 제2008-615호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0. 23.

정 선 군 수

1. 사 업 명 :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지정
2. 도로위치 : 남면 무릉리 590-16
3. 도로길이 : 10 m
4. 도로폭(지정) : 4.4 m
5. 도로면적 : 48 m<sup>2</sup>
6. 지번별 도로부지조서

| 소 재 지  | 지 번    | 지정면적(m <sup>2</sup> ) | 토지소유자 | 비 고 |
|--------|--------|-----------------------|-------|-----|
| 남면 무릉리 | 590-16 | 48m <sup>2</sup>      | 이 기 만 |     |

## 정선군공고 제2008-616호

##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1항제3호 및 제84조제2항제4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정기검사 과태료 납부고지서(독촉장)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미거주, 반송함 투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 공시송달 내역 ◇

1. 제 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독촉) 및 처분 사전 통지서 공시송달
2. 위반내용 : 정기검사지연
3.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1항제3호 및 제84조제2항제4호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등록차량 현황 : “붙임”참조
5. 공시송달 기간 : 2008. 10. 24 ~ 2008. 11. 7 (15일간)
6. 공고내용(의견제출 및 과태료 납부)
  -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 컴퓨터통신, FAX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 의견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 상기 공고대상자는 공고 기간내 정선군청 건설도시과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 등 재산을 압류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정선군청 건설도시과 (☎ 033-560-2454, Fax 560-2039)

2008. 10. 24.

정 선 군 수

## 반송내역

| 연번 | 소유자     | 주 소                        | 차량번호       | 정기검사<br>(위반)일자 | 반송사유    |
|----|---------|----------------------------|------------|----------------|---------|
| 1  | 이종영     | 고한읍 고한리 290-1              | 강원27노5234  | 08.08.26       | 수취인 미거주 |
| 2  | 전정순     | 고한읍 고한리 99-1               | 강원28노2834  | 08.08.11       | 수취인 미거주 |
| 3  | 박용남     | 고한읍 고한리 산2-7               | 51노4784    | 08.08.08       | 이사감     |
| 4  | 김명환     | 동면 호촌리 309-2               | 강원80노4493  | 08.07.03       | 이사감     |
| 5  | 이병열     | 신동읍 고성리 454-1              | 강원870더1335 | 08.07.07       | 이사감     |
| 6  | 이성도     | 고한읍 고한리 63-53 정선군임대@ 나-202 | 77더4010    | 08.07.15       | 이사감     |
| 7  | (주)태정건설 | 고한읍 고한리 36-3               | 강원28노3486  | 08.06.24       | 이사감     |
| 8  | 박현주     | 고한읍 고한리 365-1              | 85러1050    | 08.06.30       | 이사감     |
| 9  | 윤흥상     | 고한읍 고한리 66-6               | 93어1499    | 08.06.26       | 이사감     |

정선군공고 제2008-61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43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77조의2호 규정에 의거 자동차정기검사 사전(경과)안내엽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무단전출,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시송달 내역 ◇

- ☐ 제 목 :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경과)안내 엽서 공시송달
- ☐ 송달내용 : 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사전(경과) 안내
- ☐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77조의2
- ☐ 공시송달 대상자 및 등록차량 현황 : “붙임참조”
- ☐ 공시송달 기간 : 2008. 10. 24 ~ 2008. 11. 7 (15일간)

상기 공고 대상자는 빠른 시일내에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정기검사를 기간내에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최고 3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속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한 불이익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정선군청 건설도시과 (033-560-2454)

2008. 10. 24

정 선 군 수

## 반송내역

| 연번 | 차량번호      | 정기검사일    | 주 소                                  | 소유자             | 반송사유    |
|----|-----------|----------|--------------------------------------|-----------------|---------|
| 1  | 93두4140   | 08.10.18 | 동면 화암리 361-8 1/4                     | 정일술             | 이사감     |
| 2  | 강원8라2190  | 08.10.17 | 정선읍 봉양리 60-5 5/2                     | 정은용             | 이사감     |
| 3  | 87구5777   | 08.09.29 | 고한읍 고하닐 6/11                         | 차주덕             | 이사감     |
| 4  | 강원70노2090 | 08.07.21 | 남면 무릉리 827-2                         | 수강산업합자<br>회사    | 이사감     |
| 5  | 93어1494   | 08.09.21 | 고한읍 고한리 36 6/14 중앙@ 5-203            | 김해수             | 이사감     |
| 6  | 77다6135   | 08.07.08 | 정선읍 봉양리 221 3/1                      | 서양자             | 이사감     |
| 7  | 53주1521   | 08.07.05 | 고한읍 고한리 253-6 6/1                    | 윤인숙             | 이사감     |
| 8  | 51모2088   | 08.09.16 | 사북읍 사북리 산147-3 11/5 동원탄좌동원@<br>가-105 | 전용준             | 이사감     |
| 9  | 강원80노3172 | 08.09.14 | 동면 백전리 336 1/5                       | 유미영             | 이사감     |
| 10 | 92가6869   | 08.09.12 | 사북읍 사북리 294-4 2/9                    | 조천행             | 이사감     |
| 11 | 42나4247   | 08.08.26 | 정선읍 덕우리 293 1                        | 민경자             | 이사감     |
| 12 | 강원80노4149 | 08.09.27 | 사북읍 사북리 317-213 10/5                 | 전호성(형제<br>종합설비) | 수취인 미거주 |
| 13 | 947929    | 08.09.30 | 고한읍 고한리 137-6 13/7                   | 안준집             | 수취인 미거주 |
| 14 | 93더6540   | 08.09.22 | 정선읍 용탄리 687-1 2/2                    | 장동욱             | 수취인 미거주 |
| 15 | 07소2232   | 08.09.25 | 사북읍 사북리 산77 12/6                     | 최상경             | 수취인 미거주 |
| 16 | 51모2123   | 08.09.22 | 사북읍 사북리 318-5                        | (주)비앤씨          | 수취인 미거주 |
| 17 | 50서2605   | 08.07.22 | 신동읍 조동리 6-6 7/1                      | 윤요호             | 수취인 미거주 |
| 18 | 강원27노5234 | 08.07.01 | 고한읍 고한리 290-1 21/7                   | 이종영             | 수취인 미거주 |
| 19 | 51모2308   | 08.08.28 | 사북읍 사북리 산147-3 11/7                  | 장진숙             | 수취인 미거주 |
| 20 | 강원27노9229 | 08.09.25 | 정선읍 북실리 746-6 5/9 환민@ 1209호          | 현정순             | 반송함 투여  |

|    |           |          |                                     |        |        |
|----|-----------|----------|-------------------------------------|--------|--------|
| 21 | 92더4353   | 08.07.20 | 정선읍 북실리 746-6 5/9 환민@ 412호          | 강신근    | 반송함 투여 |
| 22 | 51노1071   | 08.09.08 | 사북읍 사북리 435-1 6/2 주공사북@ 2-107       | 송봉순    | 반송함 투여 |
| 23 | 강원28노3585 | 08.10.25 | 사북읍 사북리 272 1/5                     | 이병관    | 이사감    |
| 24 | 93러3692   | 08.08.23 | 임계면 골지리 197 2/2                     | 윤지영    | 이사감    |
| 25 | 93더2817   | 08.10.10 | 신동읍 고성리 454-1 1/2                   | 이병열    | 이사감    |
| 26 | 51모2164   | 08.10.12 | 남면 문곡리 249 3/4                      | 박봉기외 1 | 이사감    |
| 27 | 93어1962   | 08.10.18 | 사북읍 사북리 산147-3 11/3 동원탄좌@ 라<br>-206 | 최영호    | 이사감    |
| 28 | 강원80노2036 | 08.10.07 | 사북읍 사북리 317-70 7/5                  | 이만석    | 이사감    |
| 29 | 강원80노4670 | 08.10.25 | 동면 화암리 604                          | 김영결    | 이사감    |
| 30 | 강원28노1643 | 08.10.27 | 정선읍 덕송리 43                          | 안창균    | 이사감    |
| 31 | 93두5702   | 08.10.26 | 북평면 나전리 368-2                       | 김영수    | 이사감    |
| 32 | 강원27노9543 | 08.10.23 | 북면 유천리 563                          | 박선순    | 이사감    |
| 33 | 51모1985   | 08.08.22 | 북평면 북평리 790-2                       | (주)늘푸른 | 이사감    |
| 34 | 07소1226   | 08.09.14 | 고한읍 고한리 90-2 (주)강원랜드사원숙소<br>A-432   | 임대륜    | 반송함 투여 |
| 35 | 강원28더9494 | 08.09.23 | 고한읍 고한리 90-2 (주)강원랜드사원숙소<br>A-507   | 김정필    | 반송함 투여 |
| 36 | 07오9308   | 08.10.20 | 고한읍 고한리 373-25 고한@ 1303             | 장세연    | 반송함 투여 |
| 37 | 93어1077   | 08.10.30 | 정선읍 북실리 772-2 정선북실@ 105-407         | 이상화    | 반송함 투여 |
| 38 | 99고5530   | 08.10.04 | 정선읍 북실리 746-6 미소빌@ 1608             | 김창엽    | 반송함 투여 |
| 39 | 51모3980   | 08.08.23 | 고한읍 고한리 62-227                      | 송태호    | 반송함 투여 |
| 40 | 51모2701   | 08.10.07 | 사북읍 사북리 산160-3                      | 홍경호    | 반송함 투여 |
| 41 | 강원80노5880 | 08.10.25 | 정선읍 봉양리 385                         | 안중열    | 반송함 투여 |

## 정선군공고 제2008-619호

## 2009 정선군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정선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0. 27.

정 선 군 수

## 1. 보조단체의 범위

- 가.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
  - 나.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다.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 라. 정선군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
-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2. 보조사업의 범위

- 가. 보조단체에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 군정 주요시책 추진사업
  - 각종 군민의식개혁(계몽운동) 추진사업
  - 문화·예술·체육관련 행사
  - 기타 정선군수가 군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는 사업 및 단체의 범위
  - 친목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단체
  -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단체
  - 같은 사업으로 국비 또는 도비에서 별도의 지원을 받는 단체
  - 기타 군수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불합리 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단체

## 3. 지원 범위

- 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음
- 나. 자본적 경비는 지원 제외

4. 지원금액 : 금449,045,000원(금사익사천구백사만오천원)

5.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08. 10. 27. ~ 2008. 11. 13.

➡ 사업별 해당부서로 접수

나. 제출서류 :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별지 제1호서식]

➡ 보조금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등

6. 심사 및 결과통보

가. 「정선군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사 후 결정

➡ 선정기준 : 사업의 효과성 · 독창성 · 지역사회기여도, 신청예산의 타당성,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단체의 활동실적 등을 심사하여 선정

나. 결과통보 : 정선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 및 사업소관부서에서 단체별 통지

7. 보조금 지급 및 정산

가. 보조금 지급 : 심사결과 지원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교부 신청서, 사업 실행계획서, 보조금관리통장 사본 등을 선정된 사업의 소관부서에 제출 후 교부 결정

나. 정 산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8. 기 타

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을 환수 조치함

나. 보조금을 보조사업 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환수 조치함.

다. 관련사항은 정선군 기획감사실(☎ 560-2220) 또는 사업소관부서로 문의하시거나, 정선군청 홈페이지(<http://jeongseon.go.kr>) “공고/고시”에 게재된 『2009 정선군사회단체보조금관리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서식]

## 정선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신청서

|      |       |    |      |        |     |  |
|------|-------|----|------|--------|-----|--|
| 신청인  | 단체명   |    |      |        | 회원수 |  |
|      | 소재지   |    |      |        |     |  |
|      | 대표자   | 성명 | (한자) | 주민등록번호 |     |  |
|      |       | 주소 |      |        | 전화  |  |
| 사업내용 | 분야    |    |      |        |     |  |
|      | 신청사업명 |    |      |        |     |  |
|      | 기간    |    |      | 장 소    |     |  |
|      | 총소요금액 |    | 천원   | 지원신청액  | 천원  |  |

정선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대표자 (신청자)

(직인,사인)

정선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자체계획)
2. 전년도 단체의 사회활동 실적
3. 단체의 구성현황
4. 기타참고사항(사업시행 후 수입금에 관한 사항, 보조금외 부담경비사항등)

※ 지원 사업신청이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별지 작성해야 함.



## 5. 단체활동 실적

| 사 업 명                   | 활 동 내 용                                         | 비 고                        |
|-------------------------|-------------------------------------------------|----------------------------|
| ○○○<br>.<br>.<br>.<br>. | ○ 일시:<br>○ 장소:<br>○ 참여인원:<br>○ 집행금액:<br>○ 행사내용: | ※ 사업성격 및 일자순<br>으로 전체 기재함. |

※ 각종자료, 사진등 별지 첨부

## 6. 단체구성현황

| 임 원 진              | 회 원 수 (명) |     |     |    | 비고     |
|--------------------|-----------|-----|-----|----|--------|
|                    | 계         | 정회원 | 준회원 | 기타 |        |
| 회장:<br>부회장:<br>총무: |           |     |     |    | ※회원자격등 |

## 7. 기타 참고사항

- 사업시행후 수입금에 관한 보조금외 부담경비사항(계획)등
- 설립근거 법령 및 조례 사본
- 단체의 정관(회칙)

[별지 제2호서식]

보조금지원신청사업심사조서

|                    |      |         |          |          |                  |                                                                                                                                                                                                                         |          |          |   |
|--------------------|------|---------|----------|----------|------------------|-------------------------------------------------------------------------------------------------------------------------------------------------------------------------------------------------------------------------|----------|----------|---|
| 단 체 명              |      |         |          |          | 대 표 자            |                                                                                                                                                                                                                         |          |          |   |
| 사 업 명              |      |         |          |          | 실무부서             |                                                                                                                                                                                                                         |          |          |   |
| 세부사업 내용            |      |         |          |          | 사업내용 실무검토        |                                                                                                                                                                                                                         |          |          |   |
|                    |      |         |          |          | 검<br>토<br>항<br>목 | <input type="radio"/> 지원 대상단체(적정, 부적정)<br><input type="radio"/> 지원 대상사업(적정, 보통, 부적정)<br><input type="radio"/> 보조사업의 효과(최우수, 우수, 보통)<br><input type="radio"/> 자체비용 부담 (적정, 미흡)<br><input type="radio"/> 보조금 지원비율( % ⇒ %) |          |          |   |
|                    |      |         |          |          |                  |                                                                                                                                                                                                                         |          |          |   |
| 신 청 액<br>(천원)      | 계    | 자체부담    | 군비보조     |          | 검<br>토<br>의<br>견 |                                                                                                                                                                                                                         |          |          |   |
|                    |      |         |          | %        |                  |                                                                                                                                                                                                                         |          |          |   |
| 적 요<br>(사업및품<br>명) | 산출기초 | 신청액(천원) |          |          | 실무부서검토(천원)       |                                                                                                                                                                                                                         |          |          |   |
|                    |      | 계       | 자체<br>부담 | 군비<br>보조 | 조정액              | 사 유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종합<br>의견           |      |         |          |          | 결정액<br>(천원)      | 계                                                                                                                                                                                                                       | 자체<br>부담 | 군비<br>보조 | % |
|                    |      |         |          |          |                  |                                                                                                                                                                                                                         |          |          |   |

정선군공고 제2008-626호

정선군 금고지정 결과 공고

『정선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 금고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0. 30.

정 선 군 수

◇ 다 음 ◇

- ☐ 금융 기관 : 농협중앙회 정선군지부
- ☐ 금고의 수 : 단일금고(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 ☐ 약정 기간 : 2009. 1. 1 ~ 2012. 12. 31 (4년간)
- ☐ 지정 일자 : 2008. 10. 30

정선군공고 제2008-627호

## 소하천공사시행(소하천점용·사용)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시행령 제7조제4항(소하천정비법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점용·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0. 30.

정 선 군 수

|                             |                 |                                                  |                  |             |
|-----------------------------|-----------------|--------------------------------------------------|------------------|-------------|
| 시행<br>(점용<br>·<br>사용)<br>자  | 상호 및 명칭         |                                                  |                  |             |
|                             | 대 표 자           | 임계면장                                             | 주 소              |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
| 소 하 천 명                     |                 | 고양천                                              |                  |             |
| 공사<br>(점용<br>·<br>사용)<br>개요 | 위 치             | 정선군 임계면 고양리 221-1구거(130번지선)                      |                  |             |
|                             | 면 적             | 영구 A=314m <sup>2</sup><br>일시 A=435m <sup>2</sup> | 폐천부<br>지예상<br>면적 | ‘없 음’       |
|                             | 기 간             | 2008년 10월 28일 ~ 2009년 05월 31일                    |                  |             |
|                             | 목 적<br>및<br>사 유 | 고양리 하승두 교량설치에 따른 하천부지 점용                         |                  |             |
| 설계도서                        |                 | “ 별도보관 ”                                         |                  |             |

정선군공고 제2008-630호

###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시행 공고

화물운송사업자의 안정화 및 영세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께서는 '08. 10. 20 ~ '08. 11. 1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차대수 : 강원도 전체 20대(일반 10, 개별 5, 용달 5)

#### □ 신청대상

- 신규공급(허가)을 금지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 차령 5년 이상, 3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 현물차량 및 위수탁 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위수탁자가 쌍방 합의한 화물자동차  
<제외대상>
- 다른 법령(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하여 폐업을 전제로 보상을 받은 화물자동차

□ 신청기간 : '08. 10. 20 ~ 11. 10일까지

□ 보 상 액 : 차량가격+폐업지원금(예상영업수익 손실액) ※ 감정평가 등 별도기준에 의함

□ 선정기준 : 신청자가 많을 경우 1) 대형차량 2) 노후차량 3) 보상액이 낮은 순으로 선정

□ 신청장소 : 정선군청 건설도시과 교통행정팀

#### □ 신청서류

1. 사업용 화물차 감차사업 참가신청서 1부.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취소(감차) 동의서 1부.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증 사본 1부.
4.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1부.
5. 자동차등록증 사본(앞, 뒤) 1부
6. 차량 사진(전·후·좌·우·내부 각 2장)

7.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와 실제 차량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양 당사자 간의 합의서(인감증명서 포함) 1부.
8. 담보 등이 설정된 경우에는 각 채권자와의 합의서(인감증명서) 1부.
9. 감차대상자로 선정 시 감차보상금을 입금할 통장 사본 1부
10. 차량등록원부(7일이내 교부된 것으로 갑부, 을부 포함) 1부
11. 최근 3개월간 유가보조금이 지급된 통장사본, 직영 차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2. 운수종사자의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사본 1부.
13. 기타 감차사업에 필요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 ※ 당해 차량 운전자의 최근 3개월간의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또는 의료보험납부 확인서 등 구체적인 입증서류 제출
  -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 등 사정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문의사항

- 강원도 도로교통과 033-249-2768
- 정선군청 건설도시과 교통행정팀 033~560~2366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8. 10. 30.

정 선 군 수

## 정선군공고 제2008-631호

##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8. 10. 31.

정 선 군 수

1. 조례명 :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9.29)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층수규제를 완화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 상향조정 등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 가. 농공단지의 건폐율 상향조정(안 제48조)
  - 현행 60%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70%이하로 완화
- 나. 제2종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 완화(안 별표 4)
  -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15층 이하의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으나, 획일적인 층수 규제로 일조권 확보 및 다양한 스카이라인 형성 등에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을 18층으로 완화하고, 여러개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층수를 평균 18층이하로 적용

##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년 11월 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FAX 560-2596)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건설도시과(전화 560-2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 정선군조례 제 호

##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5호 중 “60퍼센트”를 “70퍼센트”로 한다.

별표 4의 각호외 제목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9조제4호 관련)

18층 이하(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건축물을 건축할 때 지구단위계획 등 별도의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정선군공고 제2008-632호

##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압류하였던 재산에 대하여 공매 예고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0. 31

## 정 선 군 수

1. 제 목 : 지방세 체납자 공매예고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08. 10. 31 ~ 2008. 11. 13 (14일간)
3. 공시송달대상자

| 구분       | 성명(법인) | 주 소                                           | 체납세목          | 체납액       | 송달불능사유 |
|----------|--------|-----------------------------------------------|---------------|-----------|--------|
| 공매<br>예고 | 김영일    |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302 사북선명아파트 101동302호(2통3반)     | 주민세(종합소득)외 3건 | 1,617,330 | 수취인미거주 |
| "        | 안영수    |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6-1 (6통2반)                   | 자동차세(자동차)외 8건 | 1,242,000 | 이사감    |
| "        | 김재진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233-207(9통4반)                    | 재산세(토지)       | 1,054,580 | 수취인불명  |
| "        | 리안와이리  |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571-25                          | 등록세(부동산) 외1건  | 1,809,150 | 수취인불명  |
| "        | 코랜리얼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5-15 장원빌딩 502호                | 취득세(부동산)2건    | 1,945,500 | 수취인불명  |
| "        | 이덕무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1536-1 부영아파트 111동 606호(11통2반) | 자동차세(자동차)외 9건 | 1,274,830 | 수취인불명  |
| "        | 현상일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신왕리 668-8(1통)                     | 취득세(부동산) 외 2건 | 1,283,870 | 수취인부재  |
| "        | 전정상    |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294-14사북선명오피스텔 1018호(9통4반)     | 재산세(건축물) 외 7건 | 1,410,620 | 수취인부재  |
| "        | 우희순    | 경기도 용인시수진구 고기동 240-5(2통2반)                    | 취득세(부동산) 외 1건 | 1,978,570 | 폐문부재   |
| "        | 홍미숙    |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96-59(18통3반)                  | 재산세(건축물) 외 1건 | 1,207,570 | 수취인부재  |

(2008.10.14현재, 단위 : 원)

## 4. 공시송달내용

-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공매진행을 위해 압류하였던 재산에 대하여 공매예고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등으로 서류가 반송되어 이를 공시 송달합니다.
-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시기간내에 정선군청 세무회계과 징수(033-560-2292) 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 정선군공고 제2008-633호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8. 10. 31.

정 선 군 수

1. 조 례 명 :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취지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8-2호(2008.01.14) 및 제2008-6호(2008.01.24)로 지방이전 및 투자기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상위 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관내 기업(지방기업)의 신규투자 시 고용보조금 지원내용 신설

- 지원대상 : 관내에서 3년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기업(제2조, 제7호)
- 고용보조금 지원 : 일정 규모이상(5000만원) 신규투자를 통해 신규로 상시 고용인원을 채용한 경우 24월의 범위내에서 1인당 월50만원 이하 지원(제23조)

나.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요건의 상시고용인원 완화

- 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 > 30인 이상으로 완화

다. 이전보조금 지원기준 확대(제11조)

- 건물 취득가액의 5%범위내 최고 5억원 > 10%범위내 최고 5억원

라. 부지매입보조금 지원내용 신설(제12조)

- 개별입지를 매입하는 용지비용의 20% 범위 안에서 지원(최고 5억원)
- 산업단지 용지 매입가의 50% 범위 안에서(최고3억원)

마. 임대료 지원내용 신설(제13조)

- 임대료 보조금은 정상임대료의 50% 범위내 최고 5억원

바. 교육훈련보조금 지원기준 완화(제15조)

- 상시고용인원 20인 초과 1인당 월50만원 (기업당 3억원까지)
  - 10인초과 1인당 월50만원(기업당 3억원까지)

사. 투자(시설)보조금 지원기준 확대(제16조)

- 투자금액의 10% 범위내 최고 3억원 ➢ 10% 범위내 최고 5억원

아. 물류보조금 지원기준 확대(제17조)

- 체결한 운임 및 요금의 10% 범위내 분기별 최고 2백만원까지
  - 20% 범위내 분기별 최고 5백만원까지

####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FAX 560-2594)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산업경제과(전화 560-21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 1.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정선군조례 제 호

###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유치로”를 “유치와 지방기업의 투자 및 고용창출에 따른 지원으로”로 한다.

제2조제3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중 “근로자의 인원”을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 동안의 평균인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지방기업”이란 정선군에서 3년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기업을 말한다.(기업의 사정변경으로 설립등 기상의 설립일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기업이 3년이상 사업영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제9조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를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7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9조의 3 및 제22조의”를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4항 및 제38조”로 한다.

제11조제목중 “이전비”를 “이전보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보조금”을 “이전보조금”으로, “5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12조 제목중 “산업입지보조금”을 “부지매입보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중 “산업개발단지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개별입지 및 산업단지 용지”로 한다.

②군수는 국내외투자기업이 개별입지 및 산업단지 용지를 정상가보다 인하된 가격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지매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게 되는 부지매입보조금은 개별입지를 매입 하는 용지비용의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지원하되 5억원을 초과할 수 없고, 산업단지 용지 매입가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①군수는 국내외 투자기업이 토지 또는 건물을 임대하여 입주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게 되는 임대료 보조금은 정상임대료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제2항중 “20인”을 “10인”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20인”을 “10인”으로 한다.

제15조 제목중 “공장시설보조금”을 “투자보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 “시설보조금”을 “투자보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시설보조금”을 “투자보조금”으로, “시설금액”을 “투자금액”으로, “3억원”을 “5억원”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요금의 10퍼센트”를 “요금의 20퍼센트”로 하고, “2백만원”을 “5백만원”으로, “분기별 최고 1백만원”을 “반기별 최고 5백만원”으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수도권지역 등에서 기업 및 연구소 이전에 대한 지원) 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규정에 따라 고시한 지역에서 1개기업이나 2개이상의 기업이 집단화하여 이전시 이전전후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인 경우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2개 이상의 기업이 집단화하는 경우 업체별 지원금액은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의 비율에 따라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지역에서 해당기업의 연구소가 관내로 이전하고, 이전후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인 경우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장을 제5장으로 하고, 제4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장에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장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제20조의3(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①군수는 지방기업이 일정규모 이상 신규투자를 통해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24월의 범위 내에서 1인당 월50만원 이하로 지원하되, 신규고용 건당 최대 지원 인원이 1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23조제2항중 “국내외투자기업의”를 “국내외투자기업 등의”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규칙 제 호

###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정선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를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산업입지보조금”을 “부지매입보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조례 제12조제2항”을 “조례 제12조”로, “분양가차액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 법률”을 “부지매입보조금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중 “산업입지보조금”을 “부지매입보조금”으로, “임대 및 분양계약일로부터”를 “계약일로부터”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임대료 지원) ①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임대료 지원기간은 최초지급일부터 10년 이내로 한다.

②임대료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임대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임대료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고용”을 “상시고용인원”으로 한다.

제5조제2항중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공장시설보조금”을 “투자보조금”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중 “공장시설보조금”을 “투자보조금”으로, “별지 제6호서식의 공장시설보조금신청서”를 “별지 제7호서식의 투자보조금신청서”로 한다.

제7조중 “별지 제7호서식”을 “운임 및 요금과 관련 처음 체결한 날로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

제8조의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한다.

제8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지방기업 고용보조금) ①조례 제20조의3의 규정에 따른 신규투자는 건축비(토지, 건물등을 임대하는 비용을 포함 한다.),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연구개발비 등을 포함하며, 토지매입비를 제외한다.

②조례 제20조의3의 규정에 따른 신규상시 고용인원수는 지방기업이 보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3월 평균근로자수에서 투자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근로자수를 감하여 산정한다.

③조례 제20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지방기업의 고용보조금 재원별 부담비율, 지급한도 등 지급기준은 별표 1와 같다.

④조례 제20조의3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가 이루어진 날 이후 12월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부터 제14호서식까지의 보조금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지방기업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규모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 동안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미달인원 및 기간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⑥조례 제20조의3의 규정에 따른 고용보조금 지원에 관한 그 밖의 세부적인 기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 및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제1항중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 제16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별표”를 “별표2”로 한다.

별표를 별표2로 하고, 별표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지방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급기준(제10조 관련)

| 재 원 별                     | 지급구분             | 지원금액                    | 지급한도액 (단위:억원) |             |             |              |
|---------------------------|------------------|-------------------------|---------------|-------------|-------------|--------------|
|                           |                  |                         | 계<br>(100%)   | 국비<br>(80%) | 도비<br>(10%) | 시군비<br>(10%) |
| 국비지원대상<br>(제7조4제2항<br>관련) | 소기업<br>(1-49명)   | 신규고용인원 ×50만원<br>이내×24개월 | 12            | 9.6         | 1.2         | 1.2          |
|                           | 중기업<br>(50-299명) | 신규고용인원 ×50만원<br>이내×24개월 | 12            | 9.6         | 1.2         | 1.2          |
|                           | 대기업<br>(300명이상)  | 신규고용인원 ×50만원<br>이내×24개월 | 12            | 9.6         | 1.2         | 1.2          |
|                           | 산업지원서비스업         | 신규고용인원 ×50만원<br>이내×24개월 | 12            | 9.6         | 1.2         | 1.2          |

## ※ 재원비율 적용상의 유의사항

(1) 고용보조금 지원한도는 100명 이내, 조례 제21조 관련 내지 당해 기업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낙후지역 해당시 고용보조금 재원부담 비율은 국비 90%, 지방비 10%(도비 5%, 시군비 5%)로 한다.

## (2) 지역전략산업 해당시

- 일반지역은 국비 85%, 지방비 15%(도비 7.5%, 시군비 7.5%)
- 낙후지역은 국비 95%, 지방비 5%(도비 2.5%, 시군비 2.5%)로 한다.

## 【별표 2】

## 포상금 지급기준(제11조 관련)

| 투자규모  |        | 포상금   |
|-------|--------|-------|
| 정선군내  | 산업단지   |       |
| 20억이상 | 200억이상 | 500만원 |
| 15억이상 | 150억이상 | 400만원 |
| 10억이상 | 100억이상 | 300만원 |
| 5억이상  | 50억이상  | 200만원 |
| 3억이상  | 30억이상  | 100만원 |

- ※ 1. 투자규모가 외자일 경우는 환율기준에 의한다.  
 2. 투자규모 중 토지매입비용은 제외한다.  
 3. 포상금의 지급시기는 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정선군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 본사이전보조금 신청서

|                                                                                                                          |                     |                  |                     |       |
|--------------------------------------------------------------------------------------------------------------------------|---------------------|------------------|---------------------|-------|
| 신<br>청<br>인                                                                                                              | 회 사 명               |                  | 전 화<br>(팩 스)        |       |
|                                                                                                                          | 대표자 성명<br>(주민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br>(법인등록번호) |       |
|                                                                                                                          | 대표자 주소<br>(법인은 소재지) |                  | 사업자등록일<br>(공장등록일)   |       |
| 공장소재지                                                                                                                    |                     |                  | 업 종<br>(분류번호)       |       |
| 면 적(㎡)<br>※ 공장 이외의 경우에는<br>해당되는 내용만 기재                                                                                   |                     | 총면적              | 공장용지                | 건축면적  |
|                                                                                                                          |                     |                  |                     | 사업개시일 |
| 본 사 이 전 내 역                                                                                                              |                     |                  |                     |       |
| 구 분                                                                                                                      | 이 전 前               |                  | 이 전 後               |       |
| 사업자등록일<br>(법인설립등기일)                                                                                                      |                     |                  |                     |       |
| 소 재 지                                                                                                                    |                     |                  |                     |       |
| 본사면적(㎡)                                                                                                                  |                     |                  |                     |       |
| 투자액(천원)                                                                                                                  |                     |                  |                     |       |
| 직접사용면적(㎡)                                                                                                                |                     | 직접 사용하지 않는 면적(㎡) |                     |       |
| 보조금 신청액(천원) :                                                                                                            |                     |                  |                     |       |
|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br>위와 같이 본사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 청 인]                                                                                                                  |                     |                  |                     | (인)   |
| 정선군수 귀하                                                                                                                  |                     |                  |                     |       |
|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br>2.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br>3. 본사이전에 따른 건축비 등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br>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                     |                  |                     |       |

## 【별지 제2호 서식】

## 공장이전보조금 신청서

|                       |                     |        |                     |               |
|-----------------------|---------------------|--------|---------------------|---------------|
| 신청인                   | 회 사 명               |        | 전 화<br>(팩 스)        |               |
|                       | 대표자 성명<br>(주민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br>(법인등록번호) |               |
|                       | 대표자 주소<br>(법인은 소재지) |        | 사업자등록일<br>(공장등록일)   |               |
| 공장소재지                 |                     |        | 업 종<br>(분류번호)       |               |
| 공장규모(m <sup>2</sup> ) |                     | 공장부지면적 | 제조시설면적              | 사업개시일         |
| 이전前                   | 공 장 소 재 지           |        | 사업자등록일<br>(법인등록일)   | 업 종<br>(분류번호) |
|                       |                     |        |                     |               |

## 공 장 시 설 투 자 내 역(단위:천원)

| 구 분   | 신규공장시설 | 기존 공장이전시설 |          |                    |
|-------|--------|-----------|----------|--------------------|
|       | 투자금액   | 취득금액①     | 감가상각누계액② | 공장시설가액③<br>= ① - ② |
| 계     |        |           |          |                    |
| 건 축 물 |        |           |          |                    |
| 시설장비  |        |           |          |                    |
| 기반시설  |        |           |          |                    |

## 보조금 신청액(천원) :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장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정선군수 귀하

-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 【별지 제3호 서식】

## 부지매입(입지)보조금 신청서

(앞면)

|                                                    |              |                                                                                                                                          |         |                    |            |   |
|----------------------------------------------------|--------------|------------------------------------------------------------------------------------------------------------------------------------------|---------|--------------------|------------|---|
| 지<br>원<br>대<br>상                                   | 지방이전기업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대표자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   |
|                                                    | 법인 본사<br>소재지 |                                                                                                                                          |         | 전 화                |            |   |
|                                                    |              |                                                                                                                                          |         | 팩 스                |            |   |
| 입 주 유 형                                            |              | <input type="checkbox"/> 분양(매입) <input type="checkbox"/> 임    대                                                                          |         |                    |            |   |
| 입 지 유 형                                            |              | <input type="checkbox"/> 산업단지 <input type="checkbox"/> 개별입지                                                                              |         |                    |            |   |
| 이 전 부 문                                            |              | <input type="checkbox"/> 공장 <input type="checkbox"/> 본사 <input type="checkbox"/> 연구소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   |
| 이전부문의<br>이전前 소재지                                   |              |                                                                                                                                          |         | 이전부문의<br>이전後 소재지   |            |   |
| 총분양(매입)금액<br>(총임대료)                                |              | 천원                                                                                                                                       |         | 분양가 또는<br>임대료(원/㎡) |            | 원 |
| 분양(매입)면적(㎡)<br>(임대면적)<br>※공장이외의 경우는<br>해당되는 내용만 기재 |              | 총면적                                                                                                                                      | 공장용지    | 건축면적               | 기준공장면적률(%) |   |
|                                                    |              |                                                                                                                                          |         |                    |            |   |
| 분양 등 계약<br>체결(예정)일                                 |              |                                                                                                                                          | 착공(예정)일 |                    | 설립완료(예정)일  |   |
| 업 종<br>(표준산업 분류번호)                                 |              |                                                                                                                                          |         |                    |            |   |
| 이전기업투자금액                                           |              | 천원                                                                                                                                       |         | 신규채용<br>상시고용인원     | 명<br>명     |   |
| 보조금 신청액                                            |              | 천원                                                                                                                                       |         |                    |            |   |
| 지자체 부담금                                            |              | 천원                                                                                                                                       |         |                    |            |   |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부지매입(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정선군수 귀하

(뒷면)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취득세, 등록세)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6.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별지 제4호서식]

## 임대료(□건물 □토지) 보조금 신청서

|     |                    |  |                    |  |
|-----|--------------------|--|--------------------|--|
| 신청인 | 상호 또는<br>명 칭       |  | 사업자등록번호            |  |
|     | 대 표 자<br>성 명       |  | 주민등록번호<br>(법인등록번호) |  |
|     | 대표자주소<br>(법인은 소재지) |  | 전 화                |  |
|     |                    |  | 팩 스                |  |

## 이 전 내 역

|                   |                      |
|-------------------|----------------------|
| 이전전 소재지           |                      |
| 이전후 소재지           |                      |
| 근무인원              | 본사 : 명(연구소 포함)       |
|                   | 공장 : 명               |
| 임대내역<br>□ 건물 □ 토지 | 임 대 료 : 천원( 원/제곱미터)  |
|                   | 임대면적 : 제곱미터          |
|                   | 임대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보조금 신청액(천원)       |                      |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 □토지 임대료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회사명)

대 표 자 명

(서명 또는 날인)

## 정선군수 귀하

## ※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 등본등 이전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건물 토지 임대계약서 1부
4. 투자이행각서
5. 등기부등본(건물 또는 토지) 및 임대 건축물대장 각 1부

## 【별지 제5호 서식】

## 고용보조금 신청서

|                                     |                     |     |                     |              |
|-------------------------------------|---------------------|-----|---------------------|--------------|
| 신청인                                 | 회사명                 |     | 전화<br>(팩스)          |              |
|                                     | 대표자 성명<br>(주민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br>(법인등록번호) |              |
|                                     | 대표자 주소<br>(법인은 소재지) |     | 사업자등록일<br>(공장등록일)   |              |
| 공장소재지                               |                     |     | 업종<br>(분류번호)        |              |
| 면적(㎡)<br>※공장이외의 경우에는<br>해당되는 내용만 기재 |                     | 총면적 | 공장용지                | 건축면적         |
|                                     |                     |     |                     |              |
| 이전前                                 | 소재지                 |     | 사업자등록일<br>(법인등록일)   | 업종<br>(분류번호) |
|                                     |                     |     |                     |              |
| 상시고용인원<br>(명)                       | 총인원                 |     | 지역주민<br>신규채용인원      | 기존 고용인원      |
|                                     |                     |     |                     |              |

## 보조금 신청액(천원) :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정선군수 귀하

##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사본, 주민등록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

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별지 제7호 서식】

## 투자보조금 신청서

(앞면)

|                                                    |                                                                                                                                          |                |         |                    |            |           |
|----------------------------------------------------|------------------------------------------------------------------------------------------------------------------------------------------|----------------|---------|--------------------|------------|-----------|
| 지원<br>대상                                           | 지방이전기업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대표자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           |
|                                                    | 법인 본사 소재지                                                                                                                                |                |         | 전 화                |            |           |
|                                                    |                                                                                                                                          |                |         | 팩 스                |            |           |
| 입 주 유 형                                            | <input type="checkbox"/> 분양(매입) <input type="checkbox"/> 임    대                                                                          |                |         |                    |            |           |
| 입 지 유 형                                            | <input type="checkbox"/> 산업단지 <input type="checkbox"/> 개별입지                                                                              |                |         |                    |            |           |
| 이 전 부 문                                            | <input type="checkbox"/> 공장 <input type="checkbox"/> 본사 <input type="checkbox"/> 연구소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            |           |
| 이전부문의<br>이전前 소재지                                   |                                                                                                                                          |                |         | 이전부문의<br>이전後 소재지   |            |           |
| 총분양(매입)금액<br>(총임대료)                                | 천원                                                                                                                                       |                |         | 분양가 또는<br>임대료(원/㎡) | 원          |           |
| 분양(매입)면적(㎡)<br>(임대면적)<br>※공장이외의 경우는<br>해당되는 내용만 기재 | 총면적                                                                                                                                      | 공장용지           |         | 건축면적               | 기준공장면적률(%) |           |
|                                                    |                                                                                                                                          |                |         |                    |            |           |
| 분양 등 계약<br>체결(예정)일                                 |                                                                                                                                          |                | 착공(예정)일 |                    |            | 설립완료(예정)일 |
| 업 종<br>(표준산업 분류번호)                                 |                                                                                                                                          |                |         |                    |            |           |
| 이전기업투자금액<br>(a+b+c)                                | 원                                                                                                                                        |                |         | 신규채용<br>상시고용인원     | 명<br>명     |           |
| 건축비(a)                                             | 천원                                                                                                                                       | 시설장비<br>구입비(b) | 천원      | 기반시설<br>설치비(c)     | 천원         |           |
| 보조금 신청액                                            | 천원                                                                                                                                       |                |         |                    |            |           |
| 지자체 부담금                                            | 천원                                                                                                                                       |                |         |                    |            |           |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정선군수 귀하

(뒷면)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2. 건축허가서 또는 공장설립승인서 등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제6조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6.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 【별지 제8호 서식】

## 물류보조금 신청서

|                                                    |                     |     |                     |               |
|----------------------------------------------------|---------------------|-----|---------------------|---------------|
| 신청인                                                | 회사명                 |     | 전화<br>(팩 스)         |               |
|                                                    | 대표자 성명<br>(주민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br>(법인등록번호) |               |
|                                                    | 대표자 주소<br>(법인은 소재지) |     | 사업자등록일<br>(공장등록일)   |               |
| 공장소재지                                              |                     |     | 업 종<br>(분류번호)       |               |
| 면 적(m <sup>2</sup> )<br>※공장이외의 경우에는<br>해당되는 내용만 기재 |                     | 총면적 | 공장용지                | 건축면적          |
|                                                    |                     |     |                     | 사업개시일         |
| 이전前                                                | 소재지                 |     | 사업자등록일<br>(법인등록일)   | 업 종<br>(분류번호) |
|                                                    |                     |     |                     |               |
| 상시고용인원<br>(명)                                      | 총 인 원               |     | 지역주민<br>신규채용인원      | 기존 고용인원       |
|                                                    |                     |     |                     |               |

보조금 신청액(천원) :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물류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정선군수 귀하

※ 구비서류 : 1. 운송약관 1부

2. 운송장비 등 운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별지 제10호 서식】

## 사 업 계 획 서

## 1. 일반현황

| 회 사 명 | 대표자 | 소 재 지 |          |     |    | 법인등록번호  |
|-------|-----|-------|----------|-----|----|---------|
|       |     |       |          |     |    |         |
| 업 종   | 생산품 | 종업원수  | 자산규모(억원) |     |    | 투 자 규 모 |
|       |     |       | 동산       | 부동산 | 부채 |         |
|       |     |       |          |     |    |         |

## 2. 용지 소요내역

| 대지면적(m <sup>2</sup> ) | 건 축 계 획 면 적 (m <sup>2</sup> ) |    |     |     |     |        |
|-----------------------|-------------------------------|----|-----|-----|-----|--------|
|                       | 계                             | 공장 | 연구소 | 연수동 | 숙소동 | 기타부대시설 |
|                       |                               |    |     |     |     |        |

## 3. 건설계획

| 구분/년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
| 부지매입  |       |       |       |       |       |
| 인 허 가 |       |       |       |       |       |
| 토목공사  |       |       |       |       |       |
| 건축공사  |       |       |       |       |       |
| 정상가동  |       |       |       |       |       |

## 4. 활용계획

|  |
|--|
|  |
|--|

## 5. 사업비 투자계획 및 재원 조달계획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 부 지 대 |     |     |
| 공 사 비 |     |     |
| 기 타   |     |     |
| 계     |     |     |

## 6. 기업체 연혁(기업체의 설립, 사업내용, 사업추진경위 등을 기입)

| 년 월 일 | 주 요 내 용 |
|-------|---------|
|       |         |

## 7. 상세한 이전 및 투자이행계획

|  |
|--|
|  |
|--|

[ 별지 제11호 서식 ]

###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주)는 ○○보조금 신청서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의거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을 정선군 ○○읍(면) ○번지로 이전하여 투자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내용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 위 치 :
- 이전기간 :
- 투자이행사항
  - 투자액(천원) :
  - 투 자 목 적 :

년 월 일

(각서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정선군수 귀하

## 【별지 제12호 서식】

## 국내외투자기업 관리대장

(관리번호 : 정선군-

)

(단위 : 천원, m²)

|                 |                                                                            |            |                                          |                |                       |  |
|-----------------|----------------------------------------------------------------------------|------------|------------------------------------------|----------------|-----------------------|--|
| ①지방<br>이전<br>기업 | 상호(대표자명)                                                                   |            |                                          |                |                       |  |
|                 | 주소 및 위치                                                                    |            |                                          |                |                       |  |
|                 | 연 락 처                                                                      |            | 전화 : 033)                      팩스 : 033)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신 고 일          |                       |  |
|                 | 지방이전기업<br>투자금액                                                             |            |                                          | 고용규모           | 명                     |  |
|                 | 업종<br>(분류번호)                                                               |            | ( )                                      | 주요 생산품<br>및 활동 |                       |  |
| 예 산<br>지원액      | 계획<br>입지<br><br><input type="checkbox"/> 산업<br><input type="checkbox"/> 농공 | 임대료<br>보 조 | 총금액 :                                    |                | 국비:      도비:      시비: |  |
|                 |                                                                            |            | 면 적 :                                    |                |                       |  |
|                 |                                                                            | 분양가<br>보 조 | 총금액 :                                    |                | 국비:      도비:      시비: |  |
|                 |                                                                            |            | 면 적 :                                    |                |                       |  |
|                 | 개별<br>입지                                                                   | 임대료<br>보 조 | 총금액 :                                    |                | 국비:      도비:      시비: |  |
|                 |                                                                            |            | 면 적 :                                    |                |                       |  |
|                 |                                                                            | 매입가<br>보 조 | 총금액 :                                    |                | 국비:      도비:      시비: |  |
|                 |                                                                            |            | 면 적 :                                    |                |                       |  |
|                 | 투자<br>보조                                                                   | 본사이전       | 총금액 :                                    |                | 국비:      도비:      시비: |  |
|                 |                                                                            | 공장이전       | 총금액 :                                    |                | 국비:      도비:      시비: |  |
|                 | 고용촉진보조                                                                     |            | 대상인원 :      명                            |                |                       |  |
|                 |                                                                            |            | 총금액:                                     |                | 국비:      도비:      시비: |  |
|                 | 교육훈련보조                                                                     |            | 대상인원 :      명                            |                |                       |  |
|                 |                                                                            |            | 총금액:                                     |                | 국비:      도비:      시비: |  |
|                 | ②특이<br>사항                                                                  |            |                                          |                |                       |  |

## 【별지 제13호 서식】

##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신청서

|                                                                                                                                                                                                                                    |                                                                                            |                                  |          |             |
|------------------------------------------------------------------------------------------------------------------------------------------------------------------------------------------------------------------------------------|--------------------------------------------------------------------------------------------|----------------------------------|----------|-------------|
| ①<br>지방기업                                                                                                                                                                                                                          | 상호(대표자명)                                                                                   |                                  |          |             |
|                                                                                                                                                                                                                                    | 주소 및 위치                                                                                    |                                  |          |             |
|                                                                                                                                                                                                                                    | 연락처                                                                                        | 전화 :                             | / 팩스 :   |             |
|                                                                                                                                                                                                                                    | 사업자등록번호<br>(고용보험관리번호)                                                                      | ( )                              | 업종(분류번호) |             |
|                                                                                                                                                                                                                                    | 자산규모                                                                                       |                                  | 신규투자규모   |             |
|                                                                                                                                                                                                                                    | 상시고용인원                                                                                     |                                  | 신규고용인원   |             |
|                                                                                                                                                                                                                                    | 지원 대상인원                                                                                    | 총 명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실 및<br>유사보조금 중복 수급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br>[동의인] 대표자(서명 또는 인) |                                  |          |             |
| ②정선군                                                                                                                                                                                                                               | 낙후지역 여부                                                                                    | 1. 예                      2. 아니오 |          |             |
|                                                                                                                                                                                                                                    | 고용보조금                                                                                      | 총금액:                             | 국비:      | 도비:    시군비: |
|                                                                                                                                                                                                                                    | 분담금 확보여부                                                                                   | 1. 예                      2. 아니오 |          |             |
| <p>「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br/>의하여 위와 같이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을 신청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 청 인]                      (인)</p> <p>강원도지사 귀하</p> |                                                                                            |                                  |          |             |

(뒷면)

##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등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투자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3월분 및 보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제8조~제10조의 해당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신규투자 금액이 제8조 내지 제10조에 해당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근로계약서 및 월별임금대장 사본 1부.
5. 시군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 【별지 제14호 서식】

## 사 업 계 획 서

## 1. 일반현황

| 회 사 명 | 대표자 | 소 재 지       |             | 법인등록번호 |            |
|-------|-----|-------------|-------------|--------|------------|
|       |     |             |             |        |            |
| 업 종   | 생산품 | 상시고용<br>인원수 | 신규고용<br>인원수 | 자산규모   | 신규투자<br>규모 |
|       |     |             |             |        |            |

## 2. 기업체 연혁(기업체의 설립, 사업내용, 사업추진경위 등을 기입)

| 년 월 일 | 주 요 내 용 |
|-------|---------|
|       |         |

## 3. 신규투자내역

| 투자시기 | 투자 금액 | 투자 건       | 투자목적 기술         |
|------|-------|------------|-----------------|
|      |       | ..... 생산시설 | ..... 에 소요되는 시설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4. 신규채용내역

| 연번 | 성 명 | 채용일자 | 근로 분야 |
|----|-----|------|-------|
| 1  |     |      |       |
| 2  |     |      |       |
|    |     |      |       |
|    |     |      |       |

## 5. 향후 사업계획

## 【별지 제15호 서식】

## 성실 이행각서

○○(주)는 동 재정자금 신청 건과 관련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유사보조금을 수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재정자금 신청서에 따른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 신규고용 인원 :

○ 투자이행사항

－ 투 자 액 :

－ 투자목적 :

년 월 일

(각서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확인인)

소 속 : 시장·군수명

직 위 :

성 명 : (인)

강원도지사 귀하

【별지 제16호 서식】

보조금 중복수급여부 등 조회 신청서

| 연 번 | 사업장명 | 고용보험관리번호 | 근로자 성명 | 근로자<br>주민등록번호 |
|-----|------|----------|--------|---------------|
| 1   |      |          |        |               |
| 2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① 작성대상은 보조금을 신청한 지방기업의 신규 고용인원 전체임
- ② 동 조회표 제출후 사정변경 등으로 인한 고용보험관리번호 등의 변경시에는 즉시 변경된 부분을 송부

## 【별지 제17호 서식】

## 지방기업 관리대장

|               |              |                 |             |                    |
|---------------|--------------|-----------------|-------------|--------------------|
| ①<br>지방기업     | 상호(대표자명)     |                 |             |                    |
|               | 주소 및 위치      |                 |             |                    |
|               | 연락처          | 전화 :            | / 팩스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신고일         |                    |
|               | 지방기업<br>투자금액 | 천원              | 고용규모        |                    |
|               | 업종(분류번호)     |                 | 주요 생산품 및 활동 |                    |
| 예산<br>지원액     | 고용보조         | 대상인원 :          | 명           |                    |
|               |              | 총금액 :           | 명           | 국비:    도비:    시군비: |
| ②<br>점검<br>사항 | 점검 년월일       | 이행 여부 및 관련서류 확보 |             | 변동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① 지방기업은 최근 현황으로 기록

② 점검사항은 지방기업의 의무사항 준수여부 및 증빙서류(예: 소득세원천징수이행  
상황보고서 등) 등에 대한 점검을 기록하고 지방기업의 변동사항 등을 기록

## 【별지 제18호 서식】

## 포상금지급 신청서

|                        |         |                             |                                 |  |
|------------------------|---------|-----------------------------|---------------------------------|--|
| 포 상 금<br>신 청 인<br>인적사항 | 주소(소재지) |                             |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연락처     | 전화 (HP)                     |                                 |  |
| 투자유치<br>내 역            | 투자가     |                             | 국적                              |  |
|                        | 투자기업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사업장소재지  |                             |                                 |  |
|                        | 업 종     |                             |                                 |  |
|                        | 종업원수    |                             |                                 |  |
|                        | 입주유형    | <input type="checkbox"/> 신설 | <input type="checkbox"/> 증설     |  |
|                        | 투지유형    | <input type="checkbox"/> 단독 | <input type="checkbox"/> 합작( %) |  |
|                        | 총투자비    |                             |                                 |  |
|                        | 시설투자액   |                             |                                 |  |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유치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정선군수 귀하

1. 투자가의 사업계획서 1부
  -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서류
-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확인서
2. 투자기업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3. 투자기업과 업무협약체결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4. 외자도입증명서(외자도입에 한함)
  - 외환매입증명 및 주금 납입증명(수탁은행)
5. 기타 투자유치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19호 서식】

**개인신용정보 활용동의서**

정선군수 귀하

본인은 귀 군를 비롯한 사업성평가 업무를 의뢰하는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이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하여 전국은행연합회 및 금융기관등에 등록·관리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거래정보를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성            명 :

**용역의뢰 및 신용정보활용 동의서**

정선군수 귀하

당사가 귀 군에 기업설립 및 투자를 신청함에 있어 당사의 투자계획에 대한 사업성평가 업무를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하여도 이의가 없으며, 자료 제출등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의 업무수행에 성실히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 시를 비롯한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이 당사 또는 당사의 관련기업에 대한 금융거래상황 등의 자료를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입수하여 보고서 등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주            소 :

성            명 :